

정책연구자료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김성태

2007. 3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 리 말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래한 정보화 시대에는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의 필요성에 의한 정보이용 목적과 정보주체의 정보 보호 성향이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의 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이용의 목적 및 절차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정보보호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별로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정보이용과 보호 필요성은 타금융업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상품의 가격인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보험집단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성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와 소비자주권의식의 강화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도 강화되고 있고 보험정보에는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및 감독차원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보험정보에 대한 기존 법령 및 감독차원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충분히 이용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

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법령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필요한 사항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현황 및 최근 동향을 검토한 후, 미국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김성태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태 교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안정적 법률 및 감독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3월
보험개발원
원장 김창수

목 차

요약	7
I.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15
1. 개인정보의 의의	15
2. 프라이버시의 한계와 개인정보통제권의 출현	21
II. 개인정보보호제도	41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41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51
III. 개인정보정보와 프라이버시	65
1. 개인정보정보	65
2. 현행법제하의 보험정보이용	77
3. 국내의 새로운 입법동향	85
IV. 개인정보정보의 보호·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87
1. 미국	87
2. 일본	102
V. 결론-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	111
1. 기본적 전제조건	111
2. 도입방안	121
참고문헌	129

표 목 차

<표 I-1> 개인정보의 유형	20
<표 I-2> Weible의 개인정보 분류표	36
<표 I-3>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분류표	37
<표 I-4> 영국 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38
<표 I-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39
<표 II-1>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44
<표 II-2> APEC 프라이버시 원칙(안)	48
<표 II-3> 현행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52
<표 II-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	54
<표 II-5> 각 법안의 비교	62

요 약

I.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

□ 개인정보의 유형

-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 생체·의료·교육·고용·재산·정치적 성향·종교·사회활동·문화생활 등 다양하며, 정태정보와 동태정보로 구별
- 정태정보란 개인의 현재 상태 또는 속성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성을 판별하는 기초가 되는 정보
- 동태정보란 정태정보가 축적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로서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론적(inferential) 정보

□ 개인정보의 보호

- 프라이버시는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 사적영역의 비밀성을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은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의 이용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등 일반적 인격권 등 헌법 이념에 기초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해석

II. 개인정보보호제도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UNESCO가 1970년 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국제사법재판소)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한 것이 시작
 - 1980년대 부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보호, 특히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통신, 의료, 금융산업 등에서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나 입법체계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일반법과 민간부문의 일반법의 체계로 대별하여 관리하자는 견해와 통합법체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분야별 일반법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의 일반법을 운용하자는 것이고 통합법체계는 부문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규율하자는 것임

III. 개인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 개인보험정보의 개념 및 특성
 - 개인보험정보란 보험가입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조합된 보험가입사실정보에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
 - 개인보험정보는 기본적으로 제1장에서 검토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생명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정보와 연관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괄하므로 일차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써 파악되어야 하지만,

- 개인보험정보는 역선택의 방지, 보험요율의 산정 등에 적절하게 공유·활용되어 계약심사, 계약갱신,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등을 통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절한 공유의 필요성이 존재

□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업법에서 규정

- 보험요율산출기관에게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원가 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통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즉,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업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험정보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
- 추가적으로 보험요율산출기관은 필요한 경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및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요율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질병정보에 대해서도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종류, 질병발생자의 성·연령·직업 및 질병의 발생·진행·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개인보험정보의 제공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등 이외에는 개인보험정보의 타인 제공을 금지

IV. 개인보험정보의 보호·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미국의 개인보험정보공유제도

-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 법률로는, 1979년 「The NAIC Standard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및 1996년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과 NAIC의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 등이 있음
- 미국 생명보험 의료정보국(MIB: Medical Information Bureau)의 사례
 - 생명보험 의료정보국(MIB)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인수사정 정보를 교환하는 비영리조직으로,
 - 회원인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시 생명보험사에 제출한 고지서나 진단서에서 얻은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코드화하여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와 함께 받아 활용
 - MIB에 등록되는 정보는 주로 고지, 검진, 검사결과 등(소위 入口情報)에 한정되며,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생명보험사가 과거에 지급한 급부금·보험금에 기초하여 작성한 정보(소위 出口情報)는 등록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

- 미국 손해보험요율산출기관(ISO: Insurance Services Office)의 사례
 - ISO는 보험사기방지 및 언더라이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보험사, 감독당국, 관계기관(보험범죄국 등) 등에 제공
 - ISO의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인 ClaimSearch를 통하여 개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사고정보, 산재보험에 대한 사고정보, 차량의 도난, 사고 그리고 소유정보 등의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
 - ISO의 언더라이팅지원시스템인 A Plus는 언더라이팅을 지원하는 가장 큰 클레임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약 1,300개의 보험사(미국 손해보험시장의 91%)에 개인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SO Passport시스템은 개인의 신용정보, 다른 손해보험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험가입을 위한 언더라이팅에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ISO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및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와 NAIC의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Privacy and Security Policy)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일본의 개인보험정보공유제도

- 일본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으로 2005년 4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정보의 취급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유관기관들은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사례
 -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개인보험정보보호지침에서 법령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특정하고 공표하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의 사례
 -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취급은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생명보험에 관한 이론 및 실무의 조사 및 연구, 생명보험에 관한 홍보활동, 생명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불평대응, 생명보험업자 상호의 긴밀한 연락 및 친목, 본회가맹의 각 생명보험회사소속의 생명보험모집인의 교육·시험 등, 본회가맹의 각 생명보험회사소속의 생명보험면접사의 교육·시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되는 활동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의 사례
 -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취급 목적은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손해보험의 보급·계발·의식 조사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활동 및 간행물에 의한 홍보·정보 제공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안전 방재, 교통 안전 추진, 보험 범죄등의 방지, 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계발·의식 조사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활동 및 간행물 등에 의한 홍보·정보 제공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음

V. 결론 - 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

□ 기본적 전제조건

- 보험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
 - 보험제도는 각종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설령 그 운영주체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개인법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정보공유의 당위성이 있음

- 도덕적 위험 및 역선택의 배제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보험가입자측의 주관적·적극적 심리상태(고의)로 의도적인 보험사고 유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 역선택 위험(adverse selection)은 계약체결시 보험가입자측의 위험에 관한 중요정보 은닉 등으로 보험자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
-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
 - 제3보험으로 구분된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 등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취급 영역의 한계가 없어졌고, 실손보상 상품의 개발·판매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전체를 망라한 정보를 업계 공동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공유

□ 도입방안

- 점진적인 보험정보공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보험정보공유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므로 점진적으로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종합정보시스템은 프라이버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법률을 통하여 완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적절한 감독과 업계의 자정노력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보험정보공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대응노력 뿐만 아니라 업계 공동의 대응노력, 법적·제도적 내지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노력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I.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1. 개인정보의 의의

가. 문제의 제기: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적절한 이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경제·사회적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사회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치참여의 확대·복지혜택의 부여·국방이나 납세 등 공적 의무의 부과 등을 위해 공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구에서는 대략 19세기 초엽부터 행정 권력이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이·가족 수·가구·인구는 물론이고 수입·주거환경·범죄기록·작업환경·질병 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 시기에 이루어 졌으며, 숫자로 치환된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¹⁾.

다른 한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금융산업을 비롯한 기업이나 개인 등 사적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이처럼 사적 기관에 의한 정보활동이 활성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정한 활동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1) 통계학(statistics)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state)의 통치와 관련된 학문을 뜻하며, 이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말하자면 통계학의 발전은 정보관리가 국가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뜻하며, 실제로는 금융과 조세, 인구통계 등 각종 '공식통계'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증성을 주요 덕목으로 하는 근대과학, 특히 통계학과 경제학의 상호 발전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A. Giddens, 진덕규(역), 『민족국가와 폭력』, 1991, 213~215면.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소규모상인이 외상장부를 관리한다든지, 거래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초보적 수준의 단계가 그러하다. 이는 특정 조직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객관적 시장상황의 판단이나, 보험 등 정교한 금융서비스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 즉 제3자의 부당한 악용위험에 대한 방어기능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고객의 분화현상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고객층의 선호에 따른 맞춤 서비스의 제공이나 거래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한 고객정보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B마케팅)이다²⁾.

이와 같이, 공적·사적 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자체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집·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축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고도화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엔씨소프트(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배상판결(2006년 4월),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사건, 민사채권추심을 위한 변호사의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적법성 논쟁³⁾, 미국과 일본의 대형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유출사건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와 물의를 빚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온라인 상거래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환경의 전개에 따라 개인정보침해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⁴⁾. 이에 따라 개인

2)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개념, 특성과 목적 및 시대적 당위성에 관해서는 박찬욱,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연암사, 1996), 1-31면, 최정환·최종학,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다산출판사, 2001), 9-40면 참조. 이 분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기법이 갖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 위 책 제5부 및 제6장 각각 참조.

3) 법률신문 2006.9.18. 기사 참조.

4) 조동기·김성우, 앞의 글, 5~8면.

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보험제도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⁵⁾.

여기서 국가운영 및 기업·경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나.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개념상 개인정보의 주체 즉 '개인'에 법인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개인정보의 주체에는 자연인만 포함된다 고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신체나 재산상의 특질·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⁶⁾ 또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⁷⁾를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대표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신체·정신·심리·경제·문화·사회적 특성 등의 요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한다(제2조(a)).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은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당해 데이터와 데이터관리자가 보유하거나 장차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 데이터나 정보 그리고 당해 개인에 관한 표현과 데

5) 이 보험제도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관해서는, 조혜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제도 활성화방안”, 손해보험 2006년 4월호, 44면 이하 참조.

6) 정영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22면.

7) 장경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8~9면.

이터 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및 당해 개인과 관계되는 모든 타인의 견해도 개인데이터에 포함시킨다(제1조 제1항). 프랑스의 국가정보처리자유법은 개인정보를 기명이나 무기명의 형식에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처리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제3조). 또한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개인관련 데이터를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인적 및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정의한다(제5조 제1항). 그리고 벨기에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라고 정의하며(제1조 제1항), 스웨덴의 데이터보호법 또한 개인데이터를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정보라고 정의한다(제3조). 이상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용어로서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⁸⁾를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이러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⁹⁾. 참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진한M&B, 2005, 25면.

9)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개념정의에 입각할 때, 개인정보가 가지는 주요 개념적 표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는 '자연인 개인'에 관련된 정보이다. 이 점에서 법인 기타 단체와 관련된 정보와 구별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그 정보가 사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특성이나 인격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이다¹⁰⁾.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에 국한된다.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함은 누구에 관한 정보인가를 제3자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가리킨다¹¹⁾.

다.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후술(본장 2. 다. 참조)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서부터 생체·의료·교육·고용·재산·정치적 성향·종교·사회활동·문화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들은 다시 정태정보와 동태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 정태정보라 함은 개인의 현재 상태 또는 속성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성을 판별하는 기초가 된다. 이에 대하여 동태정보는 정태정보가 축적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결 2005.05.26. 2004헌마190.

11)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3~24면.

정보로서,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론적(inferential)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정태적·기술적 정보의 축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대한 동태적·추론적 정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고, 구분된 정보의 교차참조(cross-referencing)를 통해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즉 독립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경우 서로 상승효과를 갖게 되어 개인에 대한 매우 정밀한 새로운 정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예시적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¹²⁾.

<표 1-1> 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정태적·기술적 정보	동태적·추론적 정보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혼인상태	이혼기록, 주거기록
신체 · 의료	혈액형, 성별, DNA, 지문, 심신장애	병력기록, 성전환기록
통신 · 위치	전화번호, 전자우편, 위치정보, 회원 ID, IP	통화기록, 접속로그, 이동기록
교육 · 훈련	학력, 학교성적, 자격증	상벌기록
고용 · 경력	직업, 병역상태	고용이력, 근태기록
재산 · 소비	부동산, 소득, 보험, 신용카드	신용정보, 구매형태
정치 · 사회	정당, 종교, 노조	전과기록
여가 · 생활	취미, 여가활동	대여기록, 관람기록

한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정도에 따라 절대적 개인정보와 상대적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권의 내용과 범위 및 한계를 실정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입법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되는 유형구별이다. 절대적 개인정보는 그 공개를 절대적으로 제한하여

12) 조동기·김성우,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KISDI 이슈리포트 (Vol. 2003. No.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0~11면.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는 내면의 개인정보를 가리킨다. 절대적 개인 정보에는 DNA 정보·성적 특성·건강 및 의료기록·신조나 양심의 주관적 가치 등이 해당된다. 반면 상대적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이나 계약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공개나 사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지칭하며, 예컨대 주소·학력·이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¹³⁾ 이와 같은 유형 구별을 통해 절대적 불가침으로서의 비밀과 공적 생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개념상 분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2. 프라이버시의 한계와 개인정보통제권의 출현

가. 프라이버시의 의의

1)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적 이해

개인정보보호의 연원이 프라이버시(privacy)¹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13) 정영화, 앞의 글, 27~28면.

14)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과 제도를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미국에서도 최근 입법추세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개념적으로 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2002년 4월 제안된 온라인개인사생활비밀보호법안(The Online Personal Privacy Act(S.2201))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와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로 범주화하고 있다. 개인식별정보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나열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명백하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집 및 공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감정보로는 개인신용정보, 의료정보, 인종정보, 종교활동정보, 성적 취향, 정당활동정보, 사회보장번호를 나열하고 이외의 정보로서 성명, 주소, 온라인쇼핑 정보 등은 민감정보가 아닌 것으로 예시하여 구분하고 있다. 상세는 Norian, Paige, "the struggle to keep personal data personal: attempts to reform online privacy and how congress should respond", 52 Cath.U.L.Rev.803, 2003, pp. 822~823 참조.

15) 우리 헌법상의 개념에서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다고 판단되나, 여기서는 편의상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키로 한다.

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때로는 양자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하므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기초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과 프라이버시 권이라고 하는 권리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 프라이버시인가가 아니고 어떠한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가 법적 보호의 영역에 속하는가이다'라고 하는 Hyman Gross의 고찰¹⁶⁾은 의미 있는 분석이다. 즉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 프라이버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를 어느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하는 범위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관한 법의 역할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확고부동하게 결정하는 배타적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의 법적 개념은 이에 관하여 경쟁하는 가치들 간의 이익형량의 결과이거나 상충하는 법익 중에서 선택된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법이 어떠한 이익을 프라이버시로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프라이버시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¹⁷⁾.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적 접근과 더불어 고찰하여야 할 사항이 바로 영역적 접근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관점은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은 작은 공동체로부터 국가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인 영역

16) Gross, Hyman, "The Concept of Privacy", 42 N.Y.Y. L. Rev. 34, 1967, p. 36.

17) Solove · Rotenberg,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Publishers. New York, p. 25..

으로 취급받아왔지만, 사적 영역은 개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불가침의 은둔 공간으로 여겨졌다. 서구문명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차별적으로 취급된 것은 철학적 배경에 있어서 매우 오랜 전통이다.¹⁸⁾ 사적 영역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적 규율이나 통치가 인정되는 공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분화 된 것이었다.¹⁹⁾ 이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두개의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사실,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뜻은 그가 개화된 문명사회의 일원이라는 뜻이 된다. 왜냐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문명화된 삶을 상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적 영역으로 취급받는 프라이버시의 존재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사적 영역만이 존재하는 삶은 결국 공동체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은둔자가 아니면 미개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⁰⁾ 이처럼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념은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 삶에서 출발한다. 공적 영역과 대별되는 자신만의 사적 공간이 있음과 이에 대하여 타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즉, 공적 영역에 대하여 이는 사적 영역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공적 영역의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은 인간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다고 한다.²¹⁾ 즉, 개인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거나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적절히 규율하거나 또는 그 욕구에 대한 일정한 차별이 필요하게 될 때 비로소 공적 영

18) DUBY, George, 『A History of the Private Life I: From Pagan Rome to Byzantium viii(Paul Veyne ed. & Arthur Goldhammer trans.)』 Foreword, 1987 ;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Thomas Burger trans.)』, 1991.

19) SHILS, Edwards, "Privacy: Its Constitution and Vicissitudes", 31 L. & Contemp. Probs. 1966, 281면, 283면.

20)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1958.

21) MILL, John Stuart, 『On Liberty』, 1859, 12면.

역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영역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강제할 필요성이 생기거나 법원에 관련 증거가 제출되거나 공동체 방위를 위한 지출을 공동 부담하여야 할 때 또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협력이 필요한 때 생성되게 된다고 한다²²⁾. 그러나 Mill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²³⁾.

2)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보호이익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estin에 의하면 프라이버시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 스스로에 관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그 시기, 방법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²⁴⁾. Westin은 프라이버시가 고립성, 친밀성, 익명성, 은닉성이라는 개념요소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 고립성

고립성(solitude)이란 평온 공연하게 타인이나 공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평정은 물리적 고립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자연이나 신과의 대화나 또는 신의 가호를 위한 목적 등 고립성의 근거는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일단 물리적 고립이라고 하는 목표는 프라이버시 개념요소 중에서 가장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22) Mill, John Stuart, 앞의 책.

23) Mill, John Stuart, 앞의 책, 13면, 75-76면; Stephen, James Fitzjames,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873면, 160-162면.

24) Westin, Alan, 『Privacy and Freedom』, 1967.

나) 친밀성

친밀성(intimacy)이란 인간이 은둔을 원하는 최소단위의 일원으로서 하는 행위로서 둘 사이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서로에 밀착하여 편안함과 솔직함을 느끼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목회(friendship circle), 배타적 파벌(clique)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친밀성은 인간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기초적 심리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보겠다.

다) 익명성

익명성(anonymity)이라 함은 인간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 아직은 스스로의 정체성(identity)을 밝힐 필요 없이 감시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하철을 타거나 스포츠 경기장에 가거나 거리를 걸을 때 그는 다수인의 시선을 받고 있지만, 유명인사가 아닌 한 그의 신분을 밝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저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체계적으로 감시받는 객체임을 깨닫게 된다면,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자유로움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익명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적 행위에 관한 익명성과 더불어 사상의 공표에 있어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다. 표현 행위에 있어서의 익명성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익명성이야말로 공적 프라이버시(public privacy)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 은닉성

은닉성(reserve)이라는 요소는 프라이버시 개념요소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은닉성은 원치 않는 침해로부터 심리적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은닉성이 발현된다. 인간의 삶은 대부분 고립되어서(solitude) 익명으로(anonymity) 진행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친밀성을 갖고(intimacy)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주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 갖고 있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지극히 사적인 것이거나 아주 성스러운 것, 치욕스런 것, 표현하기에 불경스런 것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은닉성은 인간관계에서 '정신적 거리(mental distance)'를 형성함과 아울러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만들어 일상적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적용된다.

3)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해석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념이 시장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향을 갖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이 양도 가능한 권리로 이해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의 취급이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al autonomy)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처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칸트(Kant)로부터 롤스(Rawls)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류평등사상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간존엄과 인류평등은 사회제도의 원

칙과 실천원리를 이루고 있다. 자신의 자료에 대한 자결성을 강조하는 정보프라이버시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존엄과 인류평등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특정한 개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하는 것,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나 절차의 명확한 수립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을 객체로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다만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객체적 자료로 전락하거나 그저 고객이나 이웃, 주민이거나 부동산 소유자로만 편면적으로 취급되거나 금융관계에서의 이용대상으로나 가치 있는 유전정보의 집합체로 여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또한 정보프라이버시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자주적 인간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정보프라이버시는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자주적 시민으로서의 인간은 주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개인의 주체적 행동·의사결정, 집회나 결사 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를 형성한다²⁶⁾.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경찰청 등의 지문보관 등의 행위가 국민의 권익침해소지가 있다'고 다툼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쟁점: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청구인 오○의 등의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경찰청의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25) Cohen, Julie E, "Examines Lives: Informational Privacy and the Subject as Object", 52 Stan. L. Rev, 2000, 1273면.

26) Cohen, Julie E, 앞의 책.

현재의 판단: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경찰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의 보관·처리·이용을 의미하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이른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²⁷⁾.

위에서 살핀 철학적 해석은 정보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출하는 데 유익하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요건 설정이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의 한계와 새로운 도구개념의 필요성

1) 종래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를 설명할 때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²⁸⁾²⁹⁾. 결국 사생활비밀과 가장 근접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틀 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

27) 헌법재판소 2005.05.26. 2004헌마190 결정.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427-431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522-524면;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50-85면;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1999, 21-60면.

29) 특히 법학계에서의 논의는 개인정보보호의 토대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기원과 법적 근거 및 성질을 규명하고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을 지적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참조하여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영역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김종철, "헌법적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24면.

보통제권을 그 핵심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³⁰⁾.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과 개인정보 자체가 유통의 대상으로 범주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경향으로 볼 때 프라이버시의 틀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관리 및 유통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이 용어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정보수정요구권이나 정보삭제요구권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 사적영역의 비밀성을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³¹⁾.

2) 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견해

이 점을 인식하고 비교적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통제권이 나 자기정보통제권이란 개념을 사용한다.³²⁾ 이는 ‘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상세한 설시를 한 바 있으며, 이 권리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³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30)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법률 제8호, 법무부, 2001, 50면 이하; 김주환,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민권”,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 45면 이하; 유황빈,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기술”,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 61면 이하;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 한국정보법학회 발표자료, 1997.

31) 김종철, 앞의 글, 29~30면.

32) 예컨대 김종철, 앞의 글, 23면 이하.

33) 현재 2005.05.26. 2004헌마190, 결정. 이러한 이론구성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급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민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

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의 헌법상 근거로써,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살핀 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개인정보통제권 또는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관리·이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권을 의미한다³⁴⁾.

34) 김종철, 앞의 글, 36면.

다. 개인정보의 분류³⁵⁾

1) 분류의 필요성

개인정보의 분류는 분류된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과 연관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다루는 제도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관리주체별 분류에 따라 그 관리주체에 대한 의무부과 및 정보주체의 관리주체에 대한 권리부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절대적 취급불가 개인정보와 상대적 취급가능 개인정보의 구별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그 규율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어떠한 기준에 따른 분류에 의하는가에 따라 법적 성격이나 평가가 달라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분류 체계 중 특히 관리주체별 분류나 침해유형별 분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는 곧 개인정보를 다루는 입법체계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 곧 분류된 개인정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리·의무 사항은 기본적인 법제 사항으로 입법이 가능할 것이며, 분류된 개인정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특별한 권리·의무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면 특별분야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³⁶⁾.

개인정보의 분류에 관하여는 아직 논의의 틀이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관리주체별 분류, 성격별 분류 및 내용별 분류 등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³⁷⁾.

35) 권현영,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연세법학연구』 제12집 제1권, 2005. 8, 27면 이하 논의를 참고하였다.

36) 입법체계에 있어서 기본법의 체계와 특별입법의 체계 정립부분의 관념은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이은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골자”,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자료집, 2004, 21면.

37) 개인정보를 분류하고 있는 기존 연구로서는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있어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80면 이하; 정영화, 앞의 글, 22면 이하 등 참조.

2) 관리주체별 분류

관리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크게 공공개인정보와 민간개인정보로 대별된다. 공공개인정보를 공공기록,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기록과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기록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³⁸⁾

공공개인정보와 민간개인정보는 관리주체에 있어서 큰 차별을 갖고 법적 근거에서 있어서도 차이를 갖는다. 즉, 공공개인정보는 수집단계로부터 각종 행정법규의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정보인데 비하여, 민간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 및 관리되는 정보이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법률관계의 속성에서 나온다. 공공행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하는 반면, 민간을 규율하는 법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 사생활의 안전한 보호가 주요 목적이 되며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사적 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재산적 가치 또는 인격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의 처분권을 주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는 현재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공공과 민간의 분류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공공의 관리주체별 분류체계는 개별 행정주체별 체계에 연동된다. 부문별 행정기관이 모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엄격히 분류하자면 일반 행정분야로서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³⁹⁾에 해당하는 일반적 공

38) 황인호, 앞의 글, 77면. 구체적으로 공공기록은 정부의 연구과정, 허가절차, 신고·신청절차,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으로서 인구통계 조사자료, 부동산양도에 따른 등기이전, 소송, 저당권 설정, 판결 및 영업허가 또는 자격인증 등의 기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나 출생 및 사망기록 등이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및 간접 수집한 정보의 분류는 사례가 불분명하다.

39) 이는 개별 부처의 업무가 아닌 분야로서의 일반행정분야가 될 것이다.

공개인정보 이외의 분야별 개인정보는 모두 그 주체별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는 특히 침해위험도가 높아 특별규율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로는 교육행정, 국방행정, 보건복지행정(보훈 포함), 국세행정, 범죄·수사·교도 등 사법행정 등이 특별 분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밖의 내용은 대개 일반 행정분야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거래관계의 태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는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류에서도 영역별 분류가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리주체의 사업영역별로 분류할 수 있다. 신용정보, 의료정보, 통신정보, 인터넷거래정보, 고용정보 등이 그 예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축적이 법적 권원없이 행하지 못하도록 집행권한을 관련산업군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진 전문 행정기관에서 말도록 하는 체계는 효율성이 높은 규율방식이다⁴¹⁾.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류체계와 위험도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따라서 관련 개인정보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부문의 경우 교육·국방·보건복지·국세·사법행정 등 침해위험이 높은 분야의 개인정보 규율은 미진한 상태이다⁴²⁾.

-
- 40) 입법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특별규율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수요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반 행정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법체체계 내에서 개인정보의 유통·관리 일반사항을 규율하고 분야별 개인정보의 수집근거나 목적 및 이용제한 등의 사항은 관련 행정법규의 내용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41) 이러한 개별행정규제체계가 종합적·객관적 감독체계와 병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특별행정규제는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체계에 의한 정책적 감독과 규제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42) 현재까지의 법률에서는 비밀누설금지 일반 조항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는 수준이거나 정보이용을 허용하는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수준이다. 이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

3) 성격별 분류

개인정보는 또한 그 민감도에 따라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분류하기도 하고 인격적 정보와 재산적 정보를 구분하여 다루기도 한다⁴³⁾. 대체로 인격적 정보 중에서 차별대우의 기준이 되는 정보는 민감도가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우처럼 다인종 및 다민족 국가에서는 인종⁴⁴⁾이나 민족정보⁴⁵⁾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출신지역, 학력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재산적 정보의 경우 신용불량기록 등이 민감도가 높은 정보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개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당한 법적 권원에 의한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격적 정보로서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원천적으로 수집이나 취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인 신분이나 가족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개인정보는 인격적 특성과 재산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⁴⁶⁾.

4) 내용별 분류

개인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서 구체화 시킨 연구⁴⁷⁾는 비교적

상희·황승흠·권현영, “정보화와 헌법”, 『디지털시대의 헌법질서』,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43~144면.

43) 황인호, 앞의 글, 79면.

44) 예컨대, 인터넷 정보에서 흑인이냐의 여부를 정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45) 예컨대, 유대인에 관한 정보라든지 아랍인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 사회적 시점에서의 차별적 정보가 가능할 것이다.

46) 황인호, 앞의 글, 80면.

47)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폭넓은 관점에서 비밀공간에 두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굳이 분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그 이용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이를 분류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근자에 이루어진 일이다. Weible은 1993년 자신의 미시시피 대학 학위 논문에서 개인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구분하였다⁴⁸⁾. 그는 개인정보를 14개의 종류로 분류하고 그 상세한 내역을 예시로 밝히고 있다.

<표 1 - 2> Weible의 개인정보 분류표

분류	예 시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	부모의 성명 및 직업, 배우자의 성명 및 직업, 부양가족의 성명, 가족구성원의 출생지 및 생년월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교육 및 훈련정보	학생기록부, 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전문면허증, 서클활동, 상벌사항, 성격 및 행태보고 등
병역정보	군번, 계급, 제대 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소유토지, 소유상점 및 건물 등
동산정보	자동차, 보유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유가증권, 수집품, 고가의 예술품, 보석 등
소득정보	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의 원천 등
기타 수익정보	보험가입현황, 보험 수익자,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 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신용정보	대출상황, 저당권설정여부, 신용카드 연체 및 미납의 수담보설정여부 등
고용정보	고용형태, 고용주, 회사주소, 상관의 성명, 직무수행 평가기록, 훈련기록, 상벌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본인 및 가족병력,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등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량, 음주량, 취민의 종류,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기록 등

주 : Weible의 분류를 표로 재정리 한 것임.

48) Weible, R.J., 『Privacy and Data』,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 1993, 166~168면.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관장하던 행정자치부(구 총무처)에서 개인정보를 분류하면서 5개의 분류항목에 따라 정리한 바 있다⁴⁹⁾⁵⁰⁾.

<표 1 - 3>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분류표

분 류	예 시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심신의 상태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및 단체 등
경제관계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생활·가정·신분관계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2001년 영국의 정보위원회 사무국⁵¹⁾에서도 정보보호법⁵²⁾의 실행을 위하여 발간한 개인정보안내지침서⁵³⁾에서 개인정보를 14개의 분류항목으로 정리하였다⁵⁴⁾.

49) 총무처 능률국, 『개인정보보호제도』, 1998, 16면.

50) 행정자치부의 분류를 표로 재정리한 것임.

51)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Notification Handbook-A Complete Guide to Notification", 2001.

52) Data Protection Act of 1998.

53)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앞의 글 참고.

54) 영국 정보위원회의 분류를 표로 재정리 한 것임.

<표 1 - 4> 영국 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분류	예 시
개인속성	성명, 주소, 연락처, 연령, 성별, 생일, 신체적 특징, 공공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 등) 등
가족, 사회 환경	혼인관계, 동거관계, 이혼경력, 가족속성, 세대원 정보, 취미, 주거환경, 여행 및 레저활동, 사회단체 봉사 및 기부활동 등
교육·훈련	학력, 자격, 기능, 직업훈련 기록, 전문성강화 실습기록, 학생기록부 등
고용 및 근로	경력 및 이력, 취업상세정보, 근태기록, 보건기록, 근무평정기록, 직장내 훈련기록, 사회보장기록 등
금융 및 신용	소득 및 수입, 자산 및 투자평가정보, 지출정보, 신용평가기록, 부채, 수익, 受贈, 보험 상세정보, 연금정보 등
계약 활동 등	제공받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한 정보, 법적 이용권 확보에 관한 정보, 계약상의 합의나 계약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인종 및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및 신앙
	노조가입정보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성생활정보
	행정처분기록 범죄 및 수사기록

자료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Notification Handbook-A Complete Guide to Notification", 2001.

2004년 우리나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관리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표에 의한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영국 정보위원회의 분류체계를 대체로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분류체계를 보다 광역화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⁵⁵⁾⁵⁶⁾.

5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관리현황조사계획, 2004. 1. 9, 4면.

56) Weible의 분류를 표로 재정리한 것임.

<표 1 -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분류		예 시
속성정보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혈액형, 신장, 체중, 사진, 지문, 장애, 기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성을 규정하는 정보
활동정보	가족, 출신 및 생활환경	결혼·이혼경력, 가족관계, 습관, 주거, 여행, 레저활동, 자선단체 가입 등
	학력 및 교육	학력, 출신학교, 성적, 학교생활, 기능, 자격 등
	고용 및 경력	취업, 사업경력, 구직·채용, 인사, 근태, 근무평정기록 등
	재산·신용·납세	수입, 임금, 투자, 지출, 채무, 보험, 재산, 연금, 보조금, 납세사실 등
	사회보장 및 행정서비스	정부로부터의 급부, 급여, 면허·특허·인가, 행정계약 등
기타		기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민감정보		인종·민족, 국적, 정치적 성향, 종교, 노조·사회단체활동, 보건·의료, 성생활, 행정처분사실, 전과·수형기록, 병역사항, 기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관리현황조사계획, 2004. 1. 9, 4면.

개인정보의 내용적 분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다. 모든 개인정보를 망라하여 나열할 수는 없으며⁵⁷⁾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분쟁이나 제도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7)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앞의 글, 16면.

5) 소결

모든 분류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분류의 적절성은 분류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기준 설정과 이에 따른 정확한 분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개인정보의 분류 목적은 개인정보의 차별적 규율이 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고찰하면 개인정보의 분류는 1차적으로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후 2차적으로 내용별 분류를 한다면 좋은 입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감도 기준은 이러한 내용별 분류 후 규율의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⁵⁸⁾.

58) 권현영, 앞의 글, 36~37면.

II. 개인정보보호제도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국제기구에 의하여 처음 논의된 것은, UNESCO가 1970년 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국제사법재판소)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2년 ICJ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1973년에 세계최초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국내입법인 스웨덴의 Datalag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어 미국이 the Privacy Act of 1974를 제정하는 등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부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보호, 특히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국제기구들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OECD는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⁵⁹⁾을 채택하여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과 국내입법의 제정을 권고하였고, UN은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⁶⁰⁾을 공표하였다. 이후 EU에서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⁶¹⁾을

59)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uidelines,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1980,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60)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95 of 14 December 1990

61)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발표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기구의 노력은 사회 각 분야가 가진 특수성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ILO의 1995년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강령⁶²⁾, UN의 2001년 7월 26일의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차별금지에 관한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1/39와 2003년 7월 22일의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차별금지에 관한 결의안 2003/232 등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홀로 있을 권리'로 이해되어 온 프라이버시권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언론기관의 상업화 및 정보사회의 진전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능동적인 권리로 발전하였다.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또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자기와, 자기의 책임 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이어 등장한 컴퓨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자신에 대한 정보의 유통과 이용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 OECD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 등 회원국의 입법적 조치를 촉구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62) The ILO's code of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이다. 1980년 OECD에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이하 OECD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OECD 이사회가 1980년 9월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대한 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을 규정⁶³⁾한 것이다. 이 지침은 장래의 기술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인 가이드라인 원칙을 반영했고 현재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원칙들이 각 회원국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동 원칙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의 개발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에 대하여 ① 적절한 국내 입법을 채택하고 ② 실행규약(Code of Conduct)이나 기타의 형식으로 자율규제를 장려하여야 하며 ③ 개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④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⑤ 정보주체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여덟 가지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UN 가이드라인이나 EU지침을 비롯하여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OECD 가이드라인 역시 회원국 내에서 준수되어야 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

63)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국내적용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National Application)과 국제적용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국내적용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8가지의 원칙, 즉 ①수집제한의 원칙②정보 정확성 원칙③목적명시의 원칙④이용제한의 원칙⑤안전성 확보의 원칙⑥공개의 원칙⑦개인참가의 원칙⑧책임의 원칙을 통상적으로 OECD 정보보호 8원칙 또는 OECD 프라이버시 원칙 등으로 부른다.

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인 OECD 가이드라인 8개원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1>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OECD 8원칙	주요내용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수집 ·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정보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목적명시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이전 또는 당시에 수집목적 명시 ·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외 이용 및 공개 금지
안전성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조직적·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공개 원칙 (Openness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개 · 개인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존재사실, 이용목적 등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
개인참가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가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 및 책임 부과

OECD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는 1999년에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에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집행할 프라이버시 보호제도 및 장치(법, 자율규범, 계약, 기술 등)에 관한 인벤토리」 등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촉구한 일련의 조치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 중 「온라인을 통한 국제적 정보이전에 관하여 계약적 해결책의 이용과 계약적 해결모델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1999년 3월 및 12월 ICCP WISP 검토보고서에서는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분쟁발생 및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지적하고 보완방법으로써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개인정보 유통방안과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외국의 정보수입업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국내 정보수출업자를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자격 부여 방안 (DRAFT)을 제안하고 있다.

나. UN

UN이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90년 이후부터였다. UN은 UNESCO의 연구활동 이후 별다른 개인정보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1990년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Guideline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을 발표하였다. UN가이드라인은 회원국들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입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자 할 때 참고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과 절차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지침은 아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파일을 규율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①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Principle of Lawfulness

and Fairness), ② 정확성 원칙(Principle of Accuracy), ③ 목적구체화의 원칙(Principle of the Purpose-specification), ④ 개인접근의 원칙(Principle of Interested-person Access), ⑤ 비차별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⑥ 안전성 원칙(Principle of Security)이다.

한편 UN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서 정보보호원칙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과 관련된 정보처리는 제1원칙부터 제4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원국에서 이러한 적용제외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적용배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제외는 오직 인권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국제인권법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외에도 동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구비된 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 및 상기 원칙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독립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EU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규정으로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EU 국가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련된 개인정보 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⁶⁴⁾은 특별히 전자거래나 인터넷만을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이나 행정목적, 기타

64)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축적·이전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1997년 12월에는 동 지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는데, 주로 ISDN(the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이나 디지털 이동 네트워크(Public Digital Mobile Network)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균등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고 EU에서의 데이터와 통신 설비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도록 각 회원국 규정들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1999년 2월에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각료위원회 권고(No. R(99)5)인 「정보고속도로에서 신상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 동 지침은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ISP)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권리로 자신들에 관한 어떠한 개인 정보가 수집·처리·저장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네트워크 운용자,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설계자 및 게시판 이용자 포함)의 의무로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도 공정하게 이용하고 데이터 통합성·기밀성·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며 개인정보의 은밀한 수집, 기록 또는 월경(Transborder) 전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라. APEC

APEC은 Working Group의 하나인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⁶⁵⁾에서 프라이버시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면서 프라

65) APEC ECSG프라이버시 소그룹(APEC ECSG Privacy Subgroup)은 APEC

이버시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APEC은 1980년의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유사한 프라이버시원칙을 2003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원칙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후속작업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⁶⁶⁾

<표 II-2> APEC 프라이버시 원칙(안)

원칙	주요내용
침해방지	· 수집된 개인정보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개인정보 오용이 발생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한 피해의 심각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수집제한	·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어야 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 에 의해 수집되어진 정보들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됨.
이용	· 개인정보의 이용은 수집목적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수집되어진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됨.
선택	· 정보의 수집·이용·공개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하면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방법이 정보주체에게 주어져야 함.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Privacy Principles) 제정을 위해 2003. 2월에 설립었다. 이 소그룹에는 한국, 미국, 호주, 홍콩을 비롯한 11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66) 2004년 3월 10번째 Draft Version임.(출처:APEC ECSR, 2004.3.)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명료하게 그들의 정책과 실행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수집목적/정보 공유가 가능한 개인이나 조직의 형태/개인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위치, 정보주체가 그들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정보주체가 그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유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자가 제공하는 선택 및 수단 ·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지는 순간 혹은 그 이전에 제공되어야하나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여야 함.
정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손실, 허가받지 않은 접근·파괴·수정 혹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수단을 제공해야 함. · 그러한 보안수단은 발생 가능한 위협의 정도와 비례해 이루어져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받아야 함.
정보 접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리적 시간 안에 적절한 방식 및 비용으로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상기 접근권과 수정요구권의 내용을 실행하는 비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위협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적합할 때, 또는 보안 및 상업적 이윤과 관련한 이유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보주체의 상기 권리들이 거부되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이유가 고지되어야 함.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관리자는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에 순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가 다른 제3자나 조직에 이전되었을 경우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정보관리자는 정보수령자나 조직이 이러한 원칙들에 의거해 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마. ICDPC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개인정보 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 연합체로서 각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모니터 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기구이다. ICDPC는 당초 EU 개인정보보호기구간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Conference)로 출발하였으나 2001년부터 참여범위를 EU외로 확대 하면서 국제기구(협의체)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0개가 넘는 개인정보 관련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Poland에서 열린 총회에서 KISA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OECD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설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현존하는 기구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기구의 세부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EU의 개인정보보호 Directive 95/46/EC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각 회원국 또는 회원국과의 정보교류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하여 권한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촉구하고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따라 자국의 개인정보를 이전치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이 절실했다.

ICDPC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의 연합체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요건을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로 인정하고 매년 9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ICDPC는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각되는⁶⁷⁾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들

67) ICDPC, "Criteria and Rules for Credentials Committee and the Accreditation Principles", B. 2., http://www.privacyconference2003.org/pdf/Criteria_and_Rules.pdf

에 대해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기구로 그 가입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ICDPC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에서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을 심사하여 자격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인정(Accreditation)하고 인정된 기관에 한하여 ICDPC의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개인정보보호원), 캐나다(개인정보보호감독관) 등 28개국 50개 기관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ICDPC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보면, ①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public body)일 것, ②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가 OECD Guideline(198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 ③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 법률이행 요구권(시정요구, 고발권)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권한을 보유할 것 등이다. 그 외에도 주요 임무로 ④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법적 자문, ⑤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 ⑥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이행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⑦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⑧ 국가간 정보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가.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

1) 서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 입법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 현행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구분	관련법규	규제내용
공공 부문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 국가·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 보호 ○ 수집·처리·이용 과정상의 정보주체 와 공공기관의 권리·의무 규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개인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통계법	○ 통계 작성 과정시 개인, 단체 법인의 비밀보호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 사생활 침해목적의 감사, 조사 제한
	국가공무원법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보호
통신 부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 보 수집, 처리 규제 ○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법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관련 사생활의 보호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 비밀유지에관한규칙	○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전기통신사업법	○ 개별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유용금지 등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	○ 위치정보의 수집·제공의 범위, 오· 남용 방지

의료 부문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관련 사생활의 보호
	의료법, 전염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유전자정보의 보호 등
금융 부문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처 리의 규제 ○ 신용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증권거래법	○ 정보의 제공, 누설 금지
기타	보험업법, 변호사법, 외국환거래법, 법무사법, 공증인법 등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보호

입법체계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은 현행 법제에 대한 개편방향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는 공공부문의 법률과 민간부문 중 정보통신 부문 및 신용부문 등의 주요 법률과 기타 개별법규의 체계로 이해되고 있다⁶⁸⁾.

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민간분야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일반법의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분야의 일반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 분야라고 하는 특수 분야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이다.

<표 II-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

헌법		
공공부문	구분	민간부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반법(컴퓨터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특별법(일반선언규정 포함, 개별분야 적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호적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령, 국세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령, 의료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서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약사법, 정신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자료 : 한상희 · 황승흠 · 권현영, 앞의 글, 143~144면; 정보통신부,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이러한 체계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일반법과 민간부문의 일반법의 체계로 대별하여 관리하자는 견해⁶⁹⁾와 통합법체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⁷⁰⁾가 있다.

69) 한상희 · 황승흠 · 권현영, 앞의 글, 143~144면; 정보통신부,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15면.

70)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정보사회연구』, 1997 가을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19면; 참여연대,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105면; 이인호,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정보사회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3, 41면 등

2) 분야별 일반법 체계

분야별 일반법의 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일반법을 운용하고, 이 체계에 따라 개별적 특별입법에 의하여 규율하자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현행 입법체계를 유지하되 공공부문의 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율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근거와 규율원리가 하나는 공법적 규율이고 하나는 사법적 규율이라는 체계상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입법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체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입법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정부정책이 정해진 이후로는 기본법의 내용과 해당기관의 입법체계를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입장으로 변모하고 있다.⁷¹⁾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의 논의는 대체로 통합입법으로 수렴되어 가면서 통합입법의 수준을 어떤 정도로 설정하고 타 입법과의 체계를 어떤 방식을 잡아나갈 것인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통합법 체계

가) 일반법

통합일반법의 체계는 실체적 규율사항까지 다 포괄하는 법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현행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들을 폐지하고, 그 해당사항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이러한 일

71) 전자신문 2004. 5. 27. 12면.

반법적 성격과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를 2003년 5월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및 시책, 기본방침 등을 규율하며 동시에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어서 공적부문에서는 기본법상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및 시책, 기본방침 등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 외의 특별규율사항은 국가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입법체계를 잡고 있다.⁷²⁾ 하나의 입법에서 기본법과 민간부문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인정하는 다소 기형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일정부분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두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입법체계는 현시점에서는 다소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 기본법

기본법에 대한 관념은 앞서 말한 일반법적 체계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기본법에 대한 구상은 일본의 법제정에서 보듯이, 민간과 공공에 다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이나 원칙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같은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일반에 대해서는 공통적 사항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공공부문은 기본권으로 승인되는 개인정보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부문은 계약에 의한 처분한도 내에서 개인정보권의 객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절차가 수집-처리-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72) 日本 内閣府 国民生活局, 『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法律 説明資料』, 2面.

따라서 얼마든지 동일한 기본원칙을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률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공공행정관리의 절차에 의하고 민간부문은 소비자보호 규제와 유사한 행정법률 체계에 의하는 차이는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부문법과 민간부문법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과 더불어 개인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와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일반 의무 등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본법 제정시 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 대원칙의 수용, ②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특별법 또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기본법의 원칙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 적용의 예외를 인정, ③ 기본법의 원칙이 보장되고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예외 규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⁷³⁾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뜨거운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감독 및 구제기구에 관한 사항도 기본법에서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분야별 입법의 발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기본법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원칙과 개인정보시스템 등을 둘러싼 개인정보권에 대한 실질적 집행 및 구제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방식에 의하여 개별 개인정보관리행정 및 분야별 사업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체계에 있어서는 기본법에 의하여 공공과 민간 및 사회 전 분야

73) 이민영,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16권8호 통권34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36면.

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실체규정을 두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분야별로 특성이 있고 향후 정보사회가 고도화 되면 분야별 특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개별 행정 분야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특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위험정도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행정 분야·교육분야·의료분야·정보통신분야·금융분야·노동분야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교육·의료 등의 경우는 현실적 위험이 노출되고 있지만 구체적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행히 교육 분야는 논란을 거치면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분야의 경우는 선진적 병원시스템에 의하여 환자 정보나 진료 정보 등이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환경이 구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입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의료정보는 대체로 민감한 정보임을 감안할 때 특별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다.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논의는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우리 환경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러한 논쟁의 근저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의해서는 개인정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통합법제에 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공·사 양 부문에 모두 관할권을 가진 강력한 보호기구를 새로이 창설하여야 한다는 데로 귀결된다⁷⁴⁾.

74) 그간 시민단체는 강력한 독립적 행정기구로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창설을 주창하여왔는데(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7.25) 최근 시민단체 입법안에서 독립기관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법안 제15조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2004: 7면 이하).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현행의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포함)(행정일반),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포함)(정보통신) 등의 일반법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신용 및 금융정보), 보건복지부(의료정보), 교육인적자원부(교육행정정보) 등 개별 행정주체가 모두 감독기구인 셈이다. 우리의 논의에서는 감독기구를 합의제 기구만으로 한정하여 보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고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향후 기본법상의 보호기구가 창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구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집행기구에 대한 총괄정책기구로서의 역할과 개인정보침해로부터 개인정보권을 보장하는 여러 구체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이 감독기구에 주어지도록 하는 등의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안(이은영 의원안 등)

1) 연혁 및 법안의 취지

정부는 2003년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일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4년 2월에는 법률안의 작성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포럼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⁷⁵⁾ 그 결과물로서 2004년 7월경 「개인정보보호기본법(시안)」이 성안된 이후 내부조정을 거쳐 2004년 12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⁷⁶⁾

75) 2004년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004년 6월 2일, 6월 16일, 그리고 6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76) 한국일보 2004.12.10일자; 조선일보 2004.12.11일자.

2005년 7월 11일, 개인정보법안이 이은영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입법의 제안취지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학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취급이 정보주체의 참여 속에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개인정보 취급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의 목적달성, 언론·출판 목적 및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6조).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며 차별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며(안 제7조 및 제8조), ②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CCTV, 쿠키 및 E-Mail 수집기 등)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여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9조). 또한 ③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1조 및 제12조), ④ 고유식별자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식별자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

15조).

그 밖에도 본 법안은 ⑤ 일정수준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6조), ⑥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강구와 제도 및 사회적 관행의 개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안 제18조 및 제19조).

3) 개인정보위원회 신설

아울러 이 법안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감독기구의 일환으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강구와 제도 및 사회적 관행의 개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8조 및 제19조).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체계적·일관적 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4조)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관하여 자료제출·현황조회 및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효과적인 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안 제37조 및 38조). 나아가 ③ 신속한 피해구제 및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0조), ④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다(제43조).

4) 다른 법안과의 비교

현재 국회에는 이은영의원 안 이외에도 두개의 법안이 더 제출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의 법안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의

법안이 그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5> 각 법안의 비교

	노회찬 안	이은영 안 (수정법안)	이혜훈 안
법률의 위상	공공·민간 통합 기본법	분야별 법률체계를 그대로 둔 법 선언형식	분야별 법률체계를 그대로 둔 법 선언형식
정보자기결정권	동의·열람·정정·삭제·파기 등의 청구권 보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록데이터베이스에 한해 도입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리구제절차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	입증책임전환	입증책임전환
감독기구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분야별 법제도의 발전은 인정)	국무총리산하 개인정보위원회 신설
개인정보침해대응	개선 권고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개인정보 사전영향 평가제도	공공	○	×
	민간	○	×
DB 및 파일 관리제도	○	×	○
자율규제	×	×	○

5) 각 법안에 대한 사안별 평가

가) 법률의 위상

법률의 위상과 관련하여 노회찬 의원의 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틀을 전제로 한 반면에, 이은영 의원의 안과 이혜훈 의원의 안은 분야별 규제를 기본 구도로 삼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것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할 필요 없이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 볼때 공공·민간의 통합적 규제에 대한 주장도 일응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를 규율해 왔다는 사실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공공·민간의 분야별 입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권리구제절차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상기 세가지 법안은 모두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회찬 의원 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노회찬 의원 안 제29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배상청구의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이하 “공동피해자”라 한다)을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회찬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집단소송'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그 침해의 양상이 광범위 하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집단소송의 도입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감독기구의 위상

감독기구의 위상과 관련하여 노회찬 의원의 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은영, 이해훈 의원 안의 경우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국가로부터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개인정보위원회를 독자적인 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수궁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 당해 업무의 주관을 담당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자율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규제의 중핵인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정보사회 도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보라는 것의 규제대상의 속성상 국가를 통한 타율적인 규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이혜훈 의원의 안이다.

정보사회의 출현과 발전은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자율규제 방식의 도입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상(제II장)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법적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 본 논문의 중심 주제인 보험고객정보(개인보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제도들의 경우 일반법적인 지위에서 개인정보정보의 규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상당수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보험과 관련된 개별 법령들의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정보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이용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가 어떠한 요건 하에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 개인정보정보

가. 개인정보정보의 개념

개인의 보험정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조합된 보험가입사실정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개인정보정보는 단순한 보험가입사실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 또는 기왕증에 대한 정보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정보 및 교통법규위반정보(벌점) 등이 순보험요율의 산정,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방지 기타 보험제도의 적정운용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유전자정보가 개인정보정보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나. 개인보험정보의 특성

개인보험정보는 기본적으로 제1장에서 검토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조합된 보험가입사실정보는 전형적인 개인정보의 범주에 든다. 더욱이, 생명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 정보는 의료정보와 연관되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보험정보는 일차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써 파악되어야 한다.

반면에 개인보험정보는 역선택의 방지, 보험요율의 산정 등에 적절하게 공유·활용되어 계약심사, 계약갱신,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 즉 개인보험정보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적절한 공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하에서 개인보험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보험제도의 특성

보험제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상의 발생 여부에 당사자 일방(보험회사)의 급부(보상)의무가 의존하는 특수한 구조의 계약이다(이른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그러므로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측의 정직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보험원리에 입각한 운용은 불가능하다. 계약 일반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民法 제2조)이 지배함은 물론이나 보험계약의 주요한 특성으로 최대선의계약성(contract of uberima fides)이 특히 중시되고 이를 그르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보험에서 정보공유의 필요성

경제주체간 상거래가 좁은 범위에 국한되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거

래범위가 광역화됨에 따라 과거에 거래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경제주체와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거래대상 자신이 스스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정보의 진위여부 판단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가령 보험회사의 경우 정보수집비용으로 인한 비용과다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계약자와 저위험 계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위험도에 비해 높은 가격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위험 계약자들은 이탈하고, 고위험 계약자만이 잔류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⁷⁷⁾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행정관리의 필요상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외에 보험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거래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등 불완전정보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정보교환제도이다⁷⁸⁾.

이 문제는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모두 필요한 대목이다.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도 계약자의 타사 가입상황은 도덕적 위험계약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보교환제도는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 특히 중복가입의 문제에 대해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교환제도의 이용을 통해 도덕적 위험을 수반한 청약에 계약 이전에 배제하는 것이 보험사고 발생 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보다 계약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건강, 질병에 관한 정보 또한 생명·손해보험산업 모두에 필수적 정보이지만, 특히 생명보험에서 자주 문제된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의료정보공유의 역할은 생명보험 각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

77) 김형기, “보험회사간 의료정보공유제도”, 보험학회지 제65집, 2003. 8, 68~69면.

78) 김형기, 앞의 글, 69면.

선택에 의한 보험가입을 방지하는데 있다. 자신의 의료정보가 생명보험사에 의해 파악된 고객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 선택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의한 선택은 회사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불안감이 있으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보험사를 선별하여 건강상의 불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다. 의료정보공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역선택의 방지에 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보험사는 불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피보험자를 무조건적으로 계약에 가입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험사업에 불가결한 공평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고 건전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진단서나 입원증명서의 내용을 생명보험사간 공유하여 각사의 업무에 활용하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으로서의 보험정보

가) 보험업법상의 관련규정

일반론은 여러 형태로 언급되므로 해당부분에서 다루고, 아울러 보험업법의 하위규정상에서도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⁷⁹⁾.

79) 보험업법 시행령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전문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2.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항~⑤항 생략.)

나) 신상정보 및 보험가입사실정보

신상정보와 조합된 보험가입사실정보는 전형적인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공적영역에서 문제가 된다면 앞 장에서 설명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민간부문에서 문제가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한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예⁸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로 포섭이 되는 부분이다.

다) 의료정보

① 의료정보의 개념

의료정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 병력기록, 정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제2호 이하: 생략.)

- 80) 송모씨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후, 다음해 3월 무렵 해당 생명사에서 발송한 보험상품 안내홍보물과 텔레마케터 전화에 시달리게 되면서부터다. 이에 송모씨는 생명보험사에 수차례 영업활동 중단을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및 홍보우편물 발송 등 별도의 영업행위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생명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배상으로 30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하였다. 머니투데이, 2003년 11월 19일자 참조.

신질환 및 신체장애 기록 등을 말한다.⁸¹⁾ 그 외에도 '진료기록'⁸²⁾, 또는 '진료정보'⁸³⁾도 의료정보에 포함된다고 하며, 광의로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예방과 처방 등에 관련된 의리지식까지도 의료정보에 포함된다.

특정 개인(환자)의 의료정보는 의료종사자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자신의 의료업무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보험, 소송, 교육, 연구, 손해보험 등에서 이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료정보는 병상, 치료과정, 체질 등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성 질환과 같은 것을 포함하며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해당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대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오늘날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의사 한사람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와 약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의 공동이용이나 협진의 필요성으로 의료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 81) 황종성 외,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방안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12, 117면.
- 82) 환자의 건강력, 진단명, 현재의 질병상태나 과거질병에 대한 사항과 그 치료내용 및 경과, 각종 검사결과, 그 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으로부터 지득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 혹은 컴퓨터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도 의료정보에 포함된다. 일본의사회, “진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침(2002년 10월 22일 일부개정 2-1(1))” 참조, 황종성 외, 위의 책, 117면에서 재인용.
- 83) 진료정보는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의료 제공을 위하여 진찰 등을 통하여 얻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써 이 같은 정보를 지면 등에 기록한 것이 진료기록이며, 그 외에 간호사가 기록하는 간호기록, 처방전, 검사기록, X-선 사진 등이 포함된다. 문성제, 이경환, “환자의 진료정보와 통제권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29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9.

또한 보건·의료·복지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제3자, 즉 보험회사·보건복지행정 종사자·의학연구자들 사이의 의료정보 공유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⁸⁴⁾.

그리고 의료분야에서도 정보화가 촉진됨에 따라 종전까지 종이문서로만 기록되던 진료기록이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s)으로 바뀌고, 병원관리시스템(HMIS)이 도입되며, 통신을 이용한 보험청구시스템(EDI)이 이용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정보 관리와 활용이 용이해진 만큼 정보의 유출·오용위험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⁸⁵⁾⁸⁶⁾.

개인의료정보의 교환이나 수집이 가장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보낼 때이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청구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내역을 상세히 보내야 한다. 이때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부터 질병에 관한 정보, 검사 등 진료행위에 관한 정보, 투약 등 치료에 관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건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월간 약 4,500만 건에서 5,000만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원에서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요양기관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해 거의 영구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제공 방법은 초기에는 서면으로 했으나, 최근 디스켓이나 EDI를 이용한 청구가 크게 늘어나서 전체의 93.3%정도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⁸⁷⁾.

84) 황중성 외, 앞의 책, 117면.

85) 신현호,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주요 쟁점, 2001. 10, 80면.

86) 1990년대 중반부터 처방전 없는 병원(OCS)을 구축하였고, 1990년대 말부터는 필름 없는 병원(PACS), 2003년부터는 종이 없는 최첨단 디지털 의료정보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다.

87) 황중성 외, 앞의 책, 120면.

③ 개인의료정보 관련 법제

i) 의료법

현행 의료법은 개인의료정보가 담긴 기록으로써 진단서등,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단서 등’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이 진단서등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지만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8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에는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진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기타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 특히 기재하는 사항 등이 있다⁸⁸⁾.

‘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기록을 말한다. 개인의료정보의 공적활용에 관련하여 주로 이 처방전의 활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18조의2). 처방전의 기재사항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등이며, 이의 교부에 있어서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고 하는 등⁸⁹⁾ 개인정보의 인터넷상 유통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88)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89)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인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히 기록되고 서명된” 문서(의료법 제21조)로서, 그 기재사항 역시 진단서등이나 처방전과 유사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⁹⁰⁾. 특히 전자의무기록은 원격의료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므로(의료법 제30조의2) 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도 있으며⁹¹⁾ 이외에 의료업의 폐업·휴업 시의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등에 관련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의료법 제33조), 공적 업무에 관련한 의료정보의 보호(의료법 제49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⁹²⁾ 등의 규정도 있다.

ii)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의료정보의 공적 활용에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정보’⁹³⁾ 관련 규정들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제12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제55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제43조),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제43조의2)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양 기관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90)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91)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92)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93) 건강보험정보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자료와 요양기관자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자료, 보험료 징수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 및 건강검진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비정구심사자료와 요양급여비지급 및 사후관리자료로 다시 분류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83조 제1항)을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게도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는 등의 권한(제84조)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각 기관에서 개인의료정보의 공적 사용에 있어서 침해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6조)는 일반적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물론 위의 공단이나 심사평가원도 공공개인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개인정보법 제10조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개인정보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⁹⁴⁾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라) 유전자 정보

① 유전자 정보의 특수성

최근 들어 분자생물학 분야를 포함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관한 정보가 과학적으로 해독가능하게 되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은 ‘유전자검사’를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유전정보⁹⁵⁾의 해독은 암과 같은 각종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94) 건강보험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 5. 10, 지침 제12호)

95) 생명윤리안전법은 “유전정보”를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로 정의

대한 치료는 물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질병 발견이나 치료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첨단의료·생명과학기술의 현저한 진보의 결과 얻어진 유전자정보는 인체에 대한 일반 의학정보에 비해 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유전자정보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프라이버시라는 점, 개인의 유전자정보로부터 가족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의 정보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 유전자정보 중에는 발병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자가 있다는 점, 유전자 질환은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 등이다⁹⁶⁾.

이러한 특성에 의해 유전자정보의 법적 취급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진단 결과 유전인자에 의한 질병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장래 발병확률의 예측은 물론 유전병의 특징이 가능한 반면에 수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과 함께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유전자 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

유전과학기술을 비롯한 생명과학의 발전은 질병치료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파괴될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⁹⁷⁾ 이에 따라 각국은 유전

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유전자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경우 유전자정보의 정의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넓게 정의하면 보험계약체결 실무상 부모 등 친족의 유전성질환에 관한 사항을 고지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유전자정보의 이용으로 되기 때문이다. 맹수석,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 보험학회지 제70집, 2005. 4, 149면.

96) 맹수석, 위의 글, 149~150면.

97) WHO, Proposed International Guidelines on Ethical Issues in Medical Genetics and Genetic Services(1998), p.1 (<http://www.who.int/genomics/publications/en/ethicalguidelines1998.pdf>).

자정보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형태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⁹⁸⁾.

그런데 법률 등으로 교육·고용과 함께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험이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경제주체가 그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어 위험단체(보험재산)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보험은 위험의 동질성과 보험단체성, 사고발생의 불확정성(우연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유전정보에 의한 보험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위험선택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위험의 동질성이 침해받게 된다. 또한 발병확률이 높은 유전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 및 이로 인하여 보험의 단체성이 파괴되는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자나 피보험자에게도 유전자정보가 위험선택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생존에 불가결한 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위협받게 됨은 물론 고액의 보험료 청구나 보험금지급거절,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유전자정보의 선천성과 관련한 보험사고의 우연성 문제, 보험가입시는 물론 그 후에 유전자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고지의무와 관련한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¹⁰⁰⁾.

98) Michael Hoy & Michael Ruse, "Regulating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Risk and Insurance Review*, 2005, Vol.8, No.2. p.211 이하 참조. 필자는 유전자정보 이용에 관한 찬반론을 소개하면서,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그 허용 여부를 단적으로 논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취한다.

99)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0), 18~20면.

100) 맹수석, 앞의 글, 150~151면.

2. 현행법제하의 보험정보이용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업법에서 규정된 것이 전부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보험정보 구심점으로서의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유일하게 인정된 법정 보험요율산출기관이다. 이 기관은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보험업법 제176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설립되어 있다¹⁰¹⁾.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은 보험협회의 설립과는 달리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76조 제1항)¹⁰²⁾.

101) 상세는 이성남·김 건 공저,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395-397면 참조. 아울러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동법 제176조 제2항).

102)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의 요건으로는 ① 법 제176조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할 것 ③ 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동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나. 보험개발원의 주요 업무

1) 업무내용 개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②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③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④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176조 제3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시행령 제86조). ①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이력 및 자동차기준가액의 정보제공 업무, 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③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④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⑤ 법 제19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가 그것이다.

이하 업무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이 기관에 허용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다. 참조)

2) 순보험요율의 신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제4항).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순보험료에 한한다)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76조 제5항)¹⁰³⁾.

3) 참조순보험요율의 제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율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87조 제1항)¹⁰⁴⁾.

4)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원가 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보험회사는 통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5) 자료의 공표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보험과 관련한 각

103)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참조순보험요율'이라고 부른다. 이성남·김 건, 「보험업법」, 396면.

104) 보험회사가 참조순보험요율을 신고하는 경우, 참조순보험요율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7조 제2항).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또는 생명보험의 경우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7조 제3항).

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제8항). 이러한 기능은 유일한 법정 요율산출기관으로서, 각종 보험관련 통계를 집중관리하는 기구의 성격상 당연히 기대되는 활동이라 하겠다.¹⁰⁵⁾

다. 교통법규 및 질병에 관한 타기관정보의 이용

1) 의의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보험제도는 대상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평가, 보험제도의 선의성 확보, 보상책임 유무의 판단 등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관련정보의 확보가 생명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원가 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할 의무를 보험개발원에 부과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통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협조할 의무를 명정(시행령 제88조 참조)한 것도 보험개발원이 고유한 설립취지를 적절하게 수행해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험개발원에 보험정보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¹⁰⁶⁾.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및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요율의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

105) 참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6조 제7항).

106) 상세는 이성남·김 건 공저, 「보험업법」, 397-399면 참조.

2)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가) 이용절차

①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위반과 관련이 있는 교통법규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항목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영 제89조 제1항).

② 보험회사에 제공 및 열람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영 제89조 제2항).

나) 이용범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적용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영 제89조 제3항).

3) 질병에 관한 통계

가) 이용절차

① 자료제공요청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질병의 종류 및 질병발생자의 성·연령·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진행·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영 제90조 제1항).

② 제공 및 열람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영 제90조 제2항).

나) 이용범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는 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적용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영 제90조 제3항).

4) 개인정보 이용자의 의무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77조).

5) 개인정보 이용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효과

직무상 알게 된 교통법규위반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02조 제4호).

라. 보험요율산출기관 보유정보의 제공

보험요율산출기관 즉 보험개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¹⁰⁷⁾ 즉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¹⁰⁸⁾,

107) 관련 내용은 이성남·김 건 공저, 「보험업법」, 399-400면 참조.

108)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판단목적외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76조 제11항).

교통법규위반정보 및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는 보험계약의 심사단계에서 물론,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공절차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제공정보·제공목적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영 제91조 제1항).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1조 제2항).

마. 입법체제 및 입법취지의 존중

이처럼 기본규정을 보험업법에 두고 있으므로 향후 보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특별법 등에 의할 필요 없이 보험업법을 개정, 보완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도 현명한 태도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비록 충분한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자가 보험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및 공유를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가 현실에 있어서는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보험관련정보를 개인정보 및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 이를 제공받아 효율산출 기타 보험제도운용의 핵심업무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제약 내지 비협조는 화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3. 국내의 새로운 입법동향

비록 보험분야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이용에 관하여 최근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 즉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법안이 마련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방상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와 활용대상 목록 등을 작성,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5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그간 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관련 법률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미흡하였고 정보화 촉진기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구체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공공정보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활용 대상 공공정보의 메타데이터

를 기록한 목록을 작성해 민간사업자가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공공정보에 대한 통제는 공공기관이 과도한 시장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이 정보의 가격을 임의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정보 제공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보 활용 가능 목록·가격체계와 여타조건을 온·오프라인으로 공표하고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공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독점적 체제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그밖에도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목록) 작성·배포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의 이용가치 배양을 위한 품질확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의 DB를 민간차원에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⁰⁹⁾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부분 자체에서 확보된 정보에 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활용방안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109) 전자신문 2005년 12월 26일자 참조.

IV. 개인보험정보의 보호·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보험업계에서 개인보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업무에 이용하여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에서의 중복지급방지 등에 이용함으로써 보험제도의 효율적 유지·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험이론적으로 민영보험업계에 한정하는 것보다 사회보험, 공제사업자 등과 연계하는 경우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가 발달된 국내에서도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 정보교류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인보험정보 이용체계의 구축 및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내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보험정보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개인보험정보의 이용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개인보험정보보호제도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1. 미국

가. 개인보험정보보호관련 법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의식이 높은 미국에서 개인보험정보를 보험업무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구축되었는지를 살피고 이 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 법률로는 1979년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NAIC)에 의하여 채택된 「NAIC 표준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The NAIC Standard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¹¹⁰⁾ 및 1996년 제정된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¹¹¹⁾(이하에서 'HIPAA'라 함)가 있다.¹¹²⁾그 외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¹¹³⁾와 그로 인한 NAIC의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¹¹⁴⁾을 들 수 있다

1) NAIC 표준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보험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1977년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위원회(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PPSC)”¹¹⁵⁾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산

110) 김두철, “보험과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금융학회지, 창간호, 1996, 183면.

111)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ub. L. No. 104-191, §§ 261~264, 1996, (대부분의 규정은 42 U.S.C. §§ 1320d~1320d-8에 법전화(codified)되었다)

112) 그 외에도 관련법으로써, 1970년에 제정되어 1971년 4월부터 시행된 신용정보 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이 있다.

113)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Pub. L. No. 106-102, 113 Stat. 1338, 12 U.S.C. 와 15 U.S.C.의 조항들을 수정하는 법이다.(이하에서 'GLB Act'라 함) Thomas R. Hrdlick, “Protecting Privacy Under Gramm-Leach-Bliley: The NAIC’s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2001-2002, 242면.

114) Standards for Safeguarding Customer Information Model Regulation, NAIC Model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 (#673).

115)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은 Pub. L. No. 93-579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업별로 조사한 연구결과¹¹⁶⁾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과 PPSC의 연구결과가 근간이 되어 NAIC에 의해 모델법이 1979년 채택되었고, 이후 1980년과 1981년 두차례에 걸쳐 수정된 후 1982년 완성되었다.¹¹⁷⁾ NAIC가 표준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을 채택한 목적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 보험판매조직, 혹은 보험관련기관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이용·관리 및 공개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려는데 있다.¹¹⁸⁾ 이 모델법을 바탕으로 각주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주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법은 15개주에서 대폭 수용되었으며¹¹⁹⁾, 명시적으로 모델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 모델법을 따르는 주가 28개에 이른다¹²⁰⁾.

이 모델법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법 제3조에서 제14조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는 보험사업자, 보험판매조직, 보험관련기관, 소비자의 보험업무와 관련된 보험정보관행상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는 법의 시행과

116) U.S.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Personal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The Report of The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188-220, 1977.

117) F. Stephen Zieleski, Catherine I. Paolino, "Insurance Privacy after GRAMM-LEACH-BLILEY - Old Concerns, New Protections, Future Challenges", *Tort and Insurance Law Journal*, 2002 Summer, 1139~1140면.

118) 김두철, 앞의 글, 184면.

119) F. Stephen Zieleski, Catherine I. Paolino, 앞의 글, 1140면.

120) 28개 주(DC포함)는 Alabama, Colorado, Delaware, DC, Florida, Hawaii,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Dakota, Oklahom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yoming 이다. F. Stephen Zieleski, Catherine I. Paolino, 앞의 글, *Survey of privacy Landscape*(표) 참조.

면책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¹²¹⁾.

NAIC 모델법에서 보험인수시 개인정보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래의 5개 조항이다¹²²⁾.

- ① 제4조(보험정보활동 통지의무) 생명보험사는 보험을 인수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청구가 있으면 정보와 관련된 개인에게 개인정보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③ 제9조(정보의 정정권)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응하여야 한다.
- ④ 제10조(불이익이 있는 인수결정이유의 통지의무) 생명보험사는 불리한 위험인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청약자나 계약자 등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제시하거나, 혹은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3조(정보공시의 제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을 요한다.

개인보험정보 이용은 제13조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하여 본인의 승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 조에서 예외규정으로 “보험업무에 관해 범죄행위, 사기, 불고지, 부실고지 유무를 조사하여 방지하는 경우나 생명보험사 등이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규정에 의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유형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보험회사, 에이전트, 보험협력조직이 업무상 필요하거나 보험사기 의심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정보제공, ②보험계약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 ③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모델법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이지만 이 예외규정에

121) 김두철, 앞의 글, 184면.

122) 김형기, 앞의 글, 72~73면.

의해 미국의 보험업계 내에서의 개인정보 교환은 우리나라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¹²³⁾.

2)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각 주의 독자적인 권한은 2001년 미국 연방보건성(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이 새로운 연방규정¹²⁴⁾을 제정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¹²⁵⁾, 이 연방규정은 1996년 제정된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하 'HIPAA'라 함)에 기초하고 있다. HIPAA는 1996년 DHHS에서 발표한 연방정책의 지침서 및 국가표준법안으로 건강보험의 컴퓨터연결 책임법이라 할 수 있다¹²⁶⁾.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정은 신원증명 정보의 사용과 공개를 좌우하며, 전자 형태로 의료상의 진원정보를 전송하는 의료보험자(Health Plans), 의료진(Health Care Providers), 의료정보 교환소(Health Care Clearinghouse)에 적용된다. HIPAA의 프라이버시 제도는 전자적으로 관리·전송되는 환자의 신원정보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환자의 전자화된 신원정보, 전자매체로부터 프린트한 문서상의 정보와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간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¹²⁷⁾ 프라이버시 제도는 환자의 권한, 법적인 책

123) 김형기, 앞의 글, 73면.

124)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45 C.F.R. §§ 160, 164, 2001.

125) 그러나 이 연방규정이 주법을 완전하게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주법이 건강정보의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Joy L. Pritts, "Altered States: State Health Privacy Laws and the Impact of the Federal Health Privacy Rule", Yale Journal of Health Policy, Law & Ethics, 2002 Spring. 340면.

126) 강경근, 앞의 글, 204면.

127) 황종성 외, 앞의 책, 124면.

입, 공적인 의무, 사용제한의 범위 및 보안의 5가지 원칙 하에 운영된다.

가) 환자의 권한 (Consumer Control)

환자들은 자신들의 의무기록 사본을 열람할 권리, 의무기록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그들의 의료정보 공개 자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나) 법적인 책임 (Accountability)

환자의 프라이버시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 민사벌과 형사벌이 따른다. 민사벌칙의 경우 2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형사벌칙의 경우는 2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공적인 의무 (Public Responsibility)

프라이버시 보호는 국가적으로 우선시 되는 사항에 있어서 공적인 의무를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우선시 되는 사항에는 공중위생보호, 의학연구수행, 치료의 질 향상, 의료사기의 방지 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도 한 나라의 법질서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는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즉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른 사회적 중요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가치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선한다. 그리고 의료분야에서 「의료사기의 방지」도 이러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사용제한 범위 (Boundaries)

의료정보에서 환자의 신원정보의 사용은 치료와 급여를 포함한 의료의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병원측은 치료,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의료진 혹은 의료계획을 수행하는 병원

직원들은 고용, 해고, 진급과 같은 비의료의 목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 보안 (Security)

의료정보를 위탁받은 기관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시스템을 감시하게 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실행되고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프라이버시 규정은 환자 개인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서 환자는 의무기록의 사용과 공개를 제한할 권한, 의료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지를 받을 권한, 의무기록의 사본을 받아볼 권한, 기록공개의 이유를 설명받을 권한, 그리고 자신의 의무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규정은 행정상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보험자, 의료진, 의료정보 교환소가 그들의 업무에 적합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그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⁸⁾.

3)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GLB Act의 제5장(Title V)에는 보험사와 기타 금융기관과의 사적 목적의(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계약에서 일반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 NPI)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¹²⁹⁾ GLB Act의 프라이버시 기준은 각 주에서 이와 조화되는 법을 만들

128) 황종성 외, 위의 책, 124~125면. 강경근, 앞의 글, 204~205면.

129) 회사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보험을 계약한 개인에게 Title V는 적용되지 않는다. John P. Halvorsen, "Today's Insurance Information Privacy - Why New Jersey Leads the Pack", New Jersey Lawyer; The Magazine, 2001 October, 40면.

도록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이 되는 것이다¹³⁰⁾.

GLB Act는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은 프라이버시 기준을 요청한다.

가) 개인정보정책의 고지(공개) (Disclosure of Privacy Policy)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공유)에 대한 그들의 정책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에는 보험회사가 수집하는 정보와 공개대상 제3자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지에는 과거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한 공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¹³¹⁾.

나) Opt-out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한 또한 설명되어야 한다¹³²⁾.

다)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Duty not to Disclose)

보험회사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¹³³⁾.

라) 계좌정보의 보호 (Protect Account Access Information)

보험회사는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접속코드를 고지되지 않은 제3자에

130) John P. Halvosen, 위의 글, 39면.

131) 15 U.S.C. 6803.

132) 15 U.S.C. 6802 (b) (1).

133) 15 U.S.C. 6802 (b) (2).

게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그 정보가 통신판매, 우편, E-mail을 통한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¹³⁴⁾.

마) 안전기준의 제정 (Safeguard Standards)

각 주에서는 고객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부정사용 또는 권한없는 접근을 봉쇄하고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안과 기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¹³⁵⁾.

4) NAIC의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

위에서 설명한 GLB Act가 안전기준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에 NAIC의 Privacy Issues Working Group과 NAIC 모델법을 따르던 주들로서는 기존 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¹³⁶⁾ 이에 NAIC의 Privacy Issues Working Group은 2001년 7월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2002년 봄 최종안을 결정하였다¹³⁷⁾.

이 모델규정은 크게 ① 정의(definitions), ② 의무(mandates), ③ 의무이행의 방법(suggested methods of implementation), ④ 시행에 관한 규정(enforcement provisions)으로 구성된다¹³⁸⁾.

134) 15 U.S.C. 6802 (d).

135) 15 U.S.C. 6801 (b).

136) F. Stephen Zielezienski, Catherine I. Paolino, 앞의 글, 1151면, Thomas R. Hrdlick, 앞의 글, 244~245면.

137) Thomas R. Hrdlick, 위의 글, 245면.

138) Thomas R. Hrdlick, 위의 글, 247면.

가) 정의(Definitions)¹³⁹⁾

정의규정에서는 고객(customer),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허가된 사업자(licensee),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나) 의무(Mandates)

모델규정은 허가된 사업자에게 3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업자는 포괄적인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각각의 정보보안시스템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의 본질과 규모에 비교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셋째, 각각의 정보보안시스템은 GLB Act와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¹⁴⁰⁾.

다) 의무이행의 방법(Suggested methods of implementation)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은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예시적으로(non-exclusive)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내적·외적으로 예측가능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assess risk), 그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정보보안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위험을 관리·통제하도록(manage and control risk)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 감독(oversee service provider arrangements),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의 조정(adjust the program)을 예시하고 있다¹⁴¹⁾.

139) NAIC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 Model Regulation, Section 4.

140) Thomas R. Hrdlick, 앞의 글, 248~249면.

141) Thomas R. Hrdlick, 위의 글, 249~250면.

라) 시행에 관한 규정(Enforcement provisions)

마지막으로,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은 모델 규정 위반이 그 주의 Unfair Trade Practices Act 또는 여타 주법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델 규정은 이 모델 규정을 적용하는 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의 발효(發效)일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내제도와의 비교 분석

개인보험정보보호에 대한 연방법인 GLB Act가 적용되고 주 모델법인 NAIC 모델법이 있다. GLB Act에서 보험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보험감독청장에 부여(Sec. 505)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권한이 주보험청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IPAA와 GLB Act 등 프라이버시를 좀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NAIC에서도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의 제정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유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델 규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¹⁴²⁾.

다. 개인정보보험정보 이용 사례

1) 의료정보국(Medical Information Bureau: MIB)

생명보험 의료정보국(MIB)은 1902년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

142) F. Stephen Zielezienski, Catherine I. Paolino, 앞의 글 참조. Thomas R. Hrdlick, 앞의 글 참조.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방지, 보험사기 방지 및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위하여 보험기록과 병력기록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조회시스템으로 현재 약 800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회원사의 시장점유율은 98%에 이른다.¹⁴³⁾ 미국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보험인수시 MIB의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IB에 대한 정보의 입력은 회원인 생명보험사로부터 MIB에 대해 이루어진다. MIB 회원인 생명보험사는 어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생명보험사에 제출한 고지서나 진단서에서 얻은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코드화하여 개인속성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와 함께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의 출력은 MIB로부터 회원사에 대해 이루어진다. 어느 생명보험사에 보험청약이 있는 경우에 생명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양해를 얻어 피보험자의 개인속성정보를 기초로 그 피보험자의 등록정보의 유무를 MIB에 온라인으로 조회한다. MIB에 당해 피보험자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조회되어 생명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통지된다.

MIB규정에 따르면 MIB에 수록된 정보는 회원사에게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이 정보만을 기초로 언더라이팅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즉 MIB로부터 받은 정보 중 청약자에 대한 불량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회사는 자체조사를 통하여 그 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입력한 회사에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MIB로부터의 정보만으로 거절하거나 할증보험료를 부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¹⁴⁴⁾.

MIB에 등록되는 정보는 주로 고지, 검진, 검사결과 등(소위 入口情報)에 한정되며,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생명보험사가 과거에 지급한 급

143) 김형기, 앞의 글, 70면.

144) 김형기, 위의 글, 71~72면.

부금·보험금에 기초하여 작성한 정보(소위 出口情報)는 등록되지 않는다¹⁴⁵⁾.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보험상품·보험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사가 판매한다. 미국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부이용희망자들은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에 각각 가입한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과 의료보험 간에 의료정보의 공유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기업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 공적보험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며 이에 부가하는 특약형태로 입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말하자면 민영보험은 일정한 범위에서 공보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¹⁴⁶⁾.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활발히 판매되면서 구분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정보의 흐름에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입원특약의 급부금을 생명보험사로부터 받기 위해 계약자는 입원증명서를 생명보험사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즉,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생명보험사에 알리게 된다.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급부금지급을 통해 진단서, 입원증명서를 본인의 동의하에 입수하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생명보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의료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피보험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생명보험사에는 특약 형태의 입원보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와 같이 입원급부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정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MIB에 의한 입구정보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입구정

145) 김형기, 앞의 글, 80~81면.

146) 민영보험의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관해서는, 김성태, 보험법강론, 43~45면 참조.

보 자체는 청약자가 고지하거나 이미 판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도 납득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¹⁴⁷⁾.

일본 와세다대학의 예자와 교수도 미국제도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MIB는 500개 이상의 미국 및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들의 협회로서, 금융서비스산업에 정보 및 DB,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1902년 설립)이다. 그 활동의 중심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청약자에 대하여 생명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장기개호보험의 적정·공평한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누락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MIB의 취급정보는 '의료정보'(신장, 체중, 혈압, 심전도기록 등)와 운전경력, 위험스포츠활동 등 '비의료정보'도 널리 다룸을 지적하고, 이 점이 일본의 '지급사정 조회제도'와 대조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등록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MIB는 연 1회 무료로 소비자에게 기록을 공개하는데, 이 때 공개되는 정보는 ① MIB의 자체 보유정보, ② MIB에 그 정보를 제공한 회원사명, ③ 공개요구 전 12개월 이전에 당해 정보를 수취한 회원사의 이름이다. 모든 소비자는 보유정보의 내용을 알 권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정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공유제도가 운용되고 있다(수정요구권, 반론권 등을 공평하게 인정함). 예자와 교수는 이런 공개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⁸⁾ 이러한 지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보험요율산출기관(Insurance Services Office)

ISO는 보험사기방지 및 언더라이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보험사, 감독당국, 관계기관(보험범죄국 등) 등에 제공하고 있다.

147) 김형기, 위의 글, 82면.

148) MIB의 운용상의 장점 등에 관해서는, 江澤雅彦, "의료보험의 언더라이팅", 생명보험 2005년 3월호, 38면 이하 참조.

ISO의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인 ClaimSearch를 통하여 개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사고정보, 산재보험에 대한 사고정보, 차량의 도난, 사고 그리고 소유정보 등의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1997년 미국손해보험협회(AIA)의 자회사인 AISG를 인수하고, 1998년에는 국가보험범죄국(NICB)으로부터 보험금 지급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수함으로써 상해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ISO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방법인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및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와 주법인 NAIC의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Privacy and Security Policy)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보호방안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승인된 주체만 개인보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동 정보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접근하고 이용해야 한다. 셋째, 개인보험정보는 외부손상 및 파괴로부터 안전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각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감시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동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등 엄격한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⁴⁹⁾.

ISO는 언더라이팅지원시스템으로 A Plus를 운영하고 있다. ISO의 A Plus는 손해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을 지원하는 최초의 가장 큰 클레임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약 1,300개의 보험사(미국 손해보험시장의 91%)가 동 시스템에 개인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SO Passport시스템은 개인의 신용정보, 다른 손해보험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험가입을 위한 언더라이팅에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⁵⁰⁾.

149) <http://www.iso.com/products/2500/prod2501.html>.

150) <http://www.iso.com/products/2500/prod2551.html>.

2. 일본

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생명보험기업에 의한 의료정보공유제도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1900년대 초에 주요 생명보험기업의 진사의장(診査醫長)에 의해 시작된 「재진거절통지 교환제도(일명, 선택정보공유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배경도 작용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 제도로써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¹⁵¹⁾.

그 후, 1980년에 입원관계특약의 중복가입에 의한 입원급부금의 사취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액, 입원급부금액 등을 등록하는 「계약내용등록제도」가 발족되었다. 이 제도는 그 존재가 공개되어 가입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 가입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정보가 공시되었다. 이는 당시 고조되어 있었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의식에 맞춘 것이었다.

한편, 비공개 상태로 계속되었던 선택정보공유제도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83년에 생명보험협회 내부에서 선택정보의 교환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첫째 제도를 공개하자는 견해, 둘째 비공개 상태로 제도를 개정하자는 견해, 셋째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개적인 의료정보공유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에 대해 각 회원사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비공개이었던 舊제도도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985년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89년에 일본보험학회의 프로젝트 보고서인 「의학정보 교환제도」 등으로 산발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모델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151) 김형기, 앞의 글, 74면.

1996년의 공정거래법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에서 업계 통일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위험선택에 대해서도 생명보험 각사의 내부업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업계 통일적인 선택 정보공유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점차 약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⁵²⁾.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의 목적은 지금까지 특별한 법규제가 없었던 생명보험산업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다. 생명보험사는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① 취급 정보의 장기성 및 다양성, ② 정보의 대량성, ③ 피보험자, 수취인 등 많은 관계자의 존재, ④ 모집인의 존재, ⑤ 심사정보의 존재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급지침(이하, FISC지침)」 및 「생명보험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급지침(이하, 생보지침)」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생명보험 각사에서도 사내규정을 정해 놓고 개인정보의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보험관계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정보의 취급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법을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취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 한해 동의없이 제3자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는 ① 법령에 기초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152) 김형기, 위의 글, 74~75면.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④ 국가 등에 협력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다.

셋째, 본인의 요구에 의해 제3자에 대한 제공을 停止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소정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 밖에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는 경우, ② 합병 기타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특정한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며 그 취지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의 범위,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과 당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가 제3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

- 국가 기관
 - 지방공공단체
 - 독립 행정법인등(독립 행정법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 행정법인등을 말한다)
 - 그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이용 방법에서 보고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등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체계는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 보호 및 운영되고 있다. 개인보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인정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보험유관기관에서 개인보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제한적으로 보험유관기관들은 주어진 업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보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한 개인보험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취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1)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의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개인보험정보보호지침상 업무의 범위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목적을 특정하고 공표하도록 협회와 달리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는 사업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를 손해보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등을 포함) 및 협동조합등간 공동 이용이다. 이용 목적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공제사업에 대한 자배법의 취지에 준거한 피해자구제를 위한 공평·공정한 손해액 산정 업무 및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기준요율 산출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임의 대인 배상 책임 보험등의 자동차 보험 제도의 할인할증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하여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직접 손해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계약 및 사고개인정보를 집적·이용하고 있다.

2) 생명보험협회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정보 취급범위에 대해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고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는 아래에 기재한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주소, 이름, 생년월일, 건강상태, 직업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생명보험에 관한 이론 및 실무의 조사 및 연구
2. 생명보험에 관한 홍보활동
3. 생명보험에 관한 상담 및 민원접수
4. 생명보험업자 상호간 긴밀한 연락 및 친목
5. 본회가맹의 각 생명보험회사소속 생명보험모집인의 교육·시험·등록
6. 본회가맹의 각 생명보험회사소속의 생명보험면접사의 교육·시험
7.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되는 활동
8.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에 관한 활동
9. 소액 단기보험모집인의 시험
10. 생명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활동
11. 채택여부 판정, 인사 평가등 기타 본회의 종업원등의 고용 관리
12. 일본 증권업협회로부터의 수탁 업무(증권 외무원의 시험·등록, 생명보험회사에의 감사, 증권업무에 관한 민원접수)
13. 심신장애자 부양자 생명보험에 관한 수탁 업무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계약내용등록제도는 1970년대 보험금 관련 살인사건의 증가, 질병급부금의 사취 혹은 自損事故 증가 등과 같은 도덕적 위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다수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 계약내용등록제도는 재해·병원입원 특약을 악용하여 입원급부금을 사취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처

하기 위해 정보교환제도를 발족시켰다. 이는 과도한 입원관련특약 가입을 체크하기 위하여 특약 청약이 있는 경우에 타사에 대한 계약청약 및 가입 상황과 같은 특정항목에 한정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이다.

1983년 4월부터는 약관으로 규정화 하였으며 「계약내용등록제도」로 통일하였다.

계약내용등록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 i) 입원급부특약형 상품에 대한 청약시 생명보험협회의 등록센터에 계약내용을 등록하여 계약의 가입상황을 조회하게 되고,
- ii) 등록센터에서는 이러한 등록정보에 의거, 가입상황을 회답하며,
- iii)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계약인수의 판단자료로 뿐만 아니라 입원급부금 청구시 급부금 지급 여부의 판단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제도의 목적, 비밀 유지, 사정·결정의 참고로 한다는 이용 목적, 정보의 오류 정정 가능 등을 사전에 청약자에게 알리고 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청약서 부분이나 약관상에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입원급부금 사취가 감소하지 않고 중복가입에 의한 악질적인 사기가 가라앉지 않자, 필요 이상의 입원특약 중복가입을 배제하는 제도로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3) 손해보험협회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취급 목적은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1) 손해보험의 보급·개발·의식 조사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활동 및 간행물에 의한 홍보·정보 제공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 2) 안전 방재, 교통 안전 추진, 보험 범죄등의 방지, 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개발·의식 조사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활동 및 간

행물등에 의한 홍보·정보 제공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 3) 환경 문제예외의 침해, NPO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활동 및 간행물등에 의한 홍보·정보 제공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 4) 손해보험 대리점, 어드저스트, 손해보험 감정인등의 자질, 기술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연수를 위한 경우
- 5) 소액 단기 보험 모집인의 자질, 기술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을 위한 경우
- 6) 손해보험과 관련되는 불평 및 상담예외의 대응 및 인정개인정보보호 단체로서 실시하는 대상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평예외의 대응
- 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청구에 임하여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손해보험회사등과의 사이에 개인 데이터를 공동 이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
- 8) 손해보험대리점등의 종업원과 관련되는 개인 데이터를 손해보험 회사가 손해보험 대리점의 적절한 감독이나 손해보험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해서 공동 이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
- 9) 손해보험대리점 시험의 합격자등의 정보와 관련되는 개인 데이터를 손해보험 회사가 손해보험 대리점에의 위탁등을 위해서 공동 이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
- 10) 일본 증권업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증권 외무원의 시험·등록, 손해보험회사에의 감사, 증권업무에 관한 불평 대응등을 위한 경우
- 11) 기타 손해보험업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 활동, 요망·제언등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손해보험(공제)과 관련되는 계약내용, 사고상황, 보험금의 청구 내용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동 이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주체 본

인이 협회 또는 고객의 인수 손해보험회사등에 대해 공개 청구를 실시할 수 있다. 등록 내용과 관련되는 개시 청구수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⁵³⁾).

- 공개청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담당 창구 또는 고객의 인수 손해보험회사등의 창구에 전화로 문의한다.
- 공개청구를 위한 소정의 용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공개청구자의 본인 확인 및 본인의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패스포트등 공적 기관이 발행한 서류의 사본, 공개청구 대상 보험(공제)계약의 보험증권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공개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우송료는 본인 부담)
- 접수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등록 내용의 확인하여 본인에 대해, 직접 회답한다(회답서 송부 우송료는 본인 부담).
- 공개된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의 인수 손해보험 회사등에 직접 문의하고 해당손해보험 회사등에서는 내용을 조사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하여 서면으로 정보주체 본인에게 직접 회답한다.

다. 국내제도와의 비교 분석

일본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처럼 개인보험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정보의 집적 · 이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데이터뱅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생 · 손보험회는 계약자등 정보주체 본인을 위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계약등록 또는 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유관기관들은 주어진 업무의 범위내

153) http://www.sonpo.or.jp/action/action_jyohokokan_kohyo.html, 損害保險會社等が共同利用する制度について (代理店等に關する制度を除く)

에서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 또는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정보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를 달리 보고 있지 않고 개인보험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미국은 보험법률 또는 보험정보보호법률에서 보험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도 개인보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규정에 추가하여 개인보험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 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

1. 기본적 전제조건

가. 보험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

보험제도는 각종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설령 그 운영주체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개인법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공적 성격이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험제도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써, 정보공유의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민영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상충되는 다른 가치에 대한 비교교량과 차제를 통해서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민영보험의 효용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공공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기로 한다.

1) 사경제적 효용

민영보험은 경제주체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은 보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위기대처능력을 높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업의 경영합리화·영속성보장기능을 갖는다. 즉 기업은 보험(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을 이용하여 고액의 재해적립금의 부담을 면하고 자금의 사장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날 기업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불규칙한 거액의 책임위험 즉 배상

금 지급위험을 정기적인 소액의 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있어서 고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여러 가지 기업보험에 의해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존립이 공고해진다. 다음으로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단체생명보험 등의 방식으로 피용자의 퇴직금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업내부의 사기나 생산성의 향상도 기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파산하는 소지를 줄여주므로 간접적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는 금융비용의 절감, 신용의 증진을 가능하게 해준다. 각종의 대형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재산·책임위험을 보험이 처리하여 종전 수준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므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왜냐하면 사고나 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투자자(채권자)는 투자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험은 금융비용을 낮추어 (insurance availability has a tendency to lower a firm's cost of capital)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한다.¹⁵⁴⁾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그 코스트를 낮추어 준다.

보험제도는 신용을 촉진하고,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함은 물론, 간접적으로 금융을 원활히 하는 보조적 역할도 담당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담보물을 화재보험에 부보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을 높혀 용자의 편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보증보험은 각종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밖에도 자동차 기타 고가의 가정용 제품 구입에 있어서 이용되는 소비자신용생명보험도 그 예이다. 또 신용장(L/C)이나 선하증권(B/L) 등과 결합하여 화환어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를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보험자는 축적된 보험료를 기금으로 하여 스스로 신용을 창출한다. 즉 자산운용의 한 방

154) Mark S. Dorfman,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5th.ed., (Prentice Hall, 1994), pp.10-11.

법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용자를 한다.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사업자는 자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이른바 「약관대부」를 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을 위한 대출을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¹⁵⁵⁾.

2) 국민경제적 효용

보험은 개별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 조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사고경력·무사고기간을 고려하여 보험료할증·할인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밖에도 보험사업자 단체가 각종의 사고예방활동(현장점검과 지도, 각종 사고방지 캠페인, 방재연구기관설립, 방재설비자금의 저리대부 등)을 펴는 것도 사고예방에 큰 몫을 차지한다. 그 결과 이재율(罹災率)이 낮아지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차익은 보험료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입는 것이다. 요컨대 보험은 사고로 인한 국가경제상의 자원낭비를 막아 준다. 또한 보험제도는 독점화 경향을 억제해 준다. 재력이나 사회적 신뢰가 높은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규모 이하의 기업은 사고를 한번 당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제도는 특히 영세기업의 존립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점화 경향을 저지(as antimonopolistic device)하는데 기여한

155) 그밖에도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판매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이용할 소비자에 대한 이른바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을 책임보험으로 부보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 두면 소비자는 이러한 상품을 선호하므로 기업 이미지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판매고도 높아진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방용 가스기기, 상해배상책임보험부 우산, 도난보험부 시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의 회원유치수단으로 보험상품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이용계약 체결시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주거나, 제과점에서 구매고객에게 자녀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예(이른바 「제휴마케팅」)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¹⁵⁶⁾. 또한 자본형성기능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보험사업자가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규모의 보험료는 국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주로 산업자본으로 공급된다. 나아가, 기업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신용이 높아지며 영속성이 보장되면 기업의 활력이 커지고 대외적인 경쟁력도 강화되어 수출이 증가하여 국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3) 사회적 효용

보험제도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기여한다. 보험자산을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대부하거나 주식·국공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복지정책에 일익을 담당한다.¹⁵⁷⁾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호기능도 갖는 바 보험제도는 재해의 방지와 신속한 복구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상해보험, 건강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등을 영위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력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아울러 재난을 당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사회적 몰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활동재개를 돕는다. 가까운 예로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이러한 기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 등 일정한 사보험상품은 사회보험 등의 급여로 처리되지 못하는 초과부분의 손해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개인연금을 사보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¹⁵⁸⁾ 이러한 사회보험보완적

156) Mark S. Dorfman,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p.10-11.

157) 이러한 목적하에 보험업법은 보험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3장 참조).

158) 그 주된 배경을 보면 첫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필요성, 둘째 공적 연금·퇴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의 가입자비율이 총 취업자의 32.5%에 불과하여 개인연금제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셋째 연금의 임금대체율(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 퇴직 후 연금지급률)이 52.5%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상세는 신기철, “개인연금취급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경영과제”, 손해보험, 94년 6월호, 21-37면 참조.

민영보험상품을 어느 한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정책의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가계이건 기업이건 묻지 않고 보험제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계획적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비록 운영주체는 사보험사업자이지만 보험은 현저히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¹⁵⁹⁾¹⁶⁰⁾.

이처럼 사보험제도는 비록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보험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충격흡수장치이다. 말하자면 ‘자기책임의 원칙’을 보완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¹⁾. 따라서 그 적절한 운용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건대 사보험제도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불가결한 완충시스템이고 그 적정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나. 역선택의 배제

1) 보험제도의 선의성 확보 문제¹⁶²⁾

가) 도덕적 위험: 보험계약의 사행적 구조와 가입자의 역선택

보험제도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당해 위험이 보험단체의 운영에

159) 따라서 보험계약은 통상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자유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자유방임하지 아니하고 국가(보험감독당국)의 규제하에 계약자(소비자) 보호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한 보험계약법의 강행법성도 인정되며 주요국의 보험계약법이 상당수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상법 제663조 참조).

160) 프랑스보험법 L.111-2조 참조.

161) 상세한 내용은 김성태 보험법강론, 103-104면.

162) 김성태, 보험법강론, 168-169면 참조.

적합한지를 평가 받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발생 여부에 보험자의 책임이 의존하는 사행계약임을 하나의 특색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극히 소액임에 반하여 보험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의 보험금은 거액이다. 이를 기화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자가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생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보험가입자측의 주관적·적극적 심리상태(고의)를 이른다. 예컨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방화를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의도적인 보험사고유발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요 폐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도덕적 위험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보험제도의 취약점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 인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가 처해 있는 위험상황은 가입자측이 가장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도 보험가입자측이다. 반면 보험거래를 대량적으로 처리하는 보험자로서는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 등의 사정으로 이러한 개별적 위험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능력이 없으므로 악의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미비점은 보험가입자측의 정직성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보험가입자측의 선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계약 일반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民法 제2조)이 지배함은 물론이나 보험계약의 주요한 특성으로 최

대선의계약성(contract of uberima fides)이 특히 강조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 발생 유형

보험가입자측이 위험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하여 불량위험을 보험에 넣고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⁶³).

첫째, 계약체결시에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하거나 위험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닉하거나 부실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액 과도하게 약정(피보험이익의 과대평가)하는 경우. 둘째,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거나¹⁶⁴)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조

163) 1997년 6월 거액의 사망보험(자신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 가입한 직장인이 진해시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던 2.5톤 트럭과 충돌,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지급 여부가 논란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건 사고관련 보험계약은 생·손보, 농·수협 등과의 공제계약을 합하여 보험금액이 51억 여원이고, 월납보험료가 559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상법상의 사망보험의 특칙(제732조의 2)상 중과실사고도 부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자측이 피보험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데 있다(대한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97년 7월호 참조).

양승규교수(143면)는 이 경우는 다음 몇가지 논거에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고지의무위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을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10조), 그리고 고의입증이 사실상 어려운만큼, 그 입증은 추정적 증거(Beweis auf erste Sicht)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164)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보험범죄 사례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내를 청부살해한 30대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한 예(인천지법 형사합의3부 1998.6.18. 선고 판결 참조);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 절단 후 강도로 허위신고한 경우; 악질 사채업자가 채무자 납치하여, 빚을 받아내기 위해 '5억원짜리 생명보험에 들고 죽으라'며 위장자살을 강요한 사건(더욱 기막힌 것은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은 몇 배나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리고, 일요일에 사고를 내도록 강요한 점이다: 동아일보 1998.4.4. 보도 참조); 체형이 비슷한 부랑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에

사를 방해하는 경우. 셋째,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사기적 청구를 하거나 손해액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라) 보험계약법상 도덕적 위험 방지장치

보험계약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사행계약성과 최대선의계약성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수한 성격을 보험가입자가 악용하여 소액의 보험료로 보험단체에 가입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처럼 보험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보험계약법외적 고려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형법상 살인죄,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 보험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좋은 예이지만,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계약법에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¹⁶⁵⁾.

2) 보험범죄의 사회적 비용

이러한 범죄 내지 반인륜적 행위는 배금주의나 황금만능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험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Today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자가 부담하는 직접손실액은 연간 £600억(\$1,0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¹⁶⁶⁾.

신고 불태워 사고사를 위장, 보험금 편취를 시도한 사건(한국재보험공사, 재보험, 1996년 7·8월호 참조) 등이 있다.

165) 김성태, 보험법강론, 170-171면.

166) 해외보험시장, 1998.7.30., 18면 이하 참조.

3) 정보공유의 중요성

우리나라 보험산업에도 보험단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정보공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 사항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¹⁶⁷⁾ 첫째, 보험분야에서도 역선택이 확산·증대되고 있어 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중요함이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역선택의 관리책임이 보험회사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역선택의 관리를 위하여 개개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역선택을 유발·촉진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경감하는데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섯째, 역선택이 발생하기 이후보다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단기·장기적 측면에서 역선택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정보공유제도 도입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최근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심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보험범죄 방지를 위하여 의료정보의 공유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¹⁶⁸⁾ 이러한 움직임은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협력관계 강화를 주안점으로 한다.

167) 김형기, 앞의 글, 85면.

168) 2006년 11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보험조사실, 보험검사2국 등) 등 주무부서에서 배포한 자료(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마련·추진) 참조

그 방안을 보면, 첫째, 현행 보험조사협의회가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보험과의 긴밀한 협력을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민영보험·국민건강보험·공제기관간 정보교환, 공동조사 및 제도개선을 총괄토록 하며 보험조사협회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신규 참여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공조체제라야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본 정보의 ‘공유’는 당연한 전제가 된다. 주무당국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기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횡수나 병력,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¹⁶⁹⁾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건강보험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⁷⁰⁾.

둘째,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보험계약 등에 대해 보험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탁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

169)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도적,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10.13.선고, 2004다16280 판결)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양승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몰래촬영과 초상권”, 손해보험 제 456호(2006년 11월), 35면 이하.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험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른바 photo tective 등 포함)은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각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견해가 아닐 수 없다.

170) 한국경제신문 2006.11.10.보도 참조.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관련 정보 분석과 사후관리, 수사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자세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다.

사평가원-보험회사간 MOU 등 별도 약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대목은 종래부터 절실히 요구되던 협력관계인 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다.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

이와 함께 제3분야 보험으로 구분된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 등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취급영역의 한계가 없어졌고, 실손보상 상품의 개발·판매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전체를 망라한 정보를 업계 공동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입방안¹⁷¹⁾

가. 점진적인 보험정보공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험정보공유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황에 대한 정보, 타 보험회사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피보험자의 습관·정신상태·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제반정보를 보험회사가 계약심사과정에서 필요시에 항상 신속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71) 효과적인 개인정보공유 문제는 신용정보의 경우 우량정보와 불량정보를 구분, 각각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 관심을 끈다. 정형권, “개인신용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가 그것이다. 동 보고서의 결론 부분(24면 이하)의 시사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와 같이 보험정보공유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 주체의 능력과 신뢰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처음부터 외국과 같이 완벽한 보험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각 보험회사 등에는 개별적으로 역선택 사례가 수집·보관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보관되어 있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 또한 각 보험회사에게 역선택에 대한 정보자료를 필요시 신속하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정보의 구심점으로 요율산출기관이며 보험공동 전산망 전담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주도로¹⁷²⁾ 여러 주체에 분산·보관되어 있는 의료관련 부문 역선택 사례들을 수집·분석·평가·정리하여 공동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검색 체제를 강

172) 이러한 보험개발원 주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유일하게 인정된 법정 보험요율산출기관이며, 이 기관은 보험업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인가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체계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험개발원의 주도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보험정보는 여타의 신용정보와는 차별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중심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산출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관련 정보를 취급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회사에 게 역선택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회원사인 생명·손해보험사는 어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제출한 고지내용(서면)이나 진단서에서 얻은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코드화하여 보험개발원에 집중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어느 보험회사에 보험청약이 있는 경우에 보험개발원에 당해 피보험자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조회되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담당자에게 통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병명, 수술여부, 시기와 관련한 의료정보를 비롯하여 무모한 운전경력, 위험한 스포츠 여부 등 비의료정보를 코드화하고 개인신상정보(이름,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등)까지도 포함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목적, 비밀 유지, 계약 사정의 참고로 한다는 사항을 사전적으로 청약자에게 알리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청약서나 약관상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청약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속성정보를 기초로 그 피보험자의 등록정보의 유무를 보험개발원에 온라인으로 조회하면 해당 피보험자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언더라이팅 담당자에게 바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와 같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이다. 특히나 가입자의 건강정보, 의료정보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

로 취급되기 때문에 역선택의 방지나 업무의 효율성을 근거로 무턱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구축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법률을 통하여 완성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미국의 NAIC이나 MIB의 역할 및 기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NAIC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Model Act나 Model Regulation을 만들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의 접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는 '고지'와 '동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단순하게 적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법적·제도적 노력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법과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MIB의 특징에서 보듯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침해위험을 고려할 때 공유되는 정보의 종류와 공유대상의 범위(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의 분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개인보험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신상정보, 보험가입사실정보, 의료정보, 유전자정보, 교통위반정보 등 각종 정보들이 각각의 특성과 침해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각각의 정보가 얼마만큼 누구에게까지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며 그 기준이 법에 투영되어야 한다.

앞서 종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논하기는 하였으나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침해위험도에 따른 공유범위 한정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보의 누출을 양지로 끌어올려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다. 적정한 감독과 업계의 자정 노력

1) 감독기관의 기준모색 노력

이러한 환경하에서 최근 우리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 하겠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동년 5월 중 시행에 들어갔다.¹⁷³⁾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카드발급시 등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개정하여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금융회사는 고객의 각종 권리사항¹⁷⁴⁾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고객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고객이 정보내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청(동의철회권)하거나 더 이상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의 정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제휴

173) 금융감독정보 제2006-18호(2006.5.1~5.6), 17-25면 참조. 다만 시행시기는 금융권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174)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요구권,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등을 가리킨다.

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약정을 별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개인CB(Credit Bureau)사¹⁷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연간 1회 또는 1주일 등 일정기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본인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더욱 용이하게 되며, 대부업체(중개업체)의 조회 기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대부업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조회시 동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홍보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감사)의 감독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운용하고 이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운용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이행상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모범규준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어도 시장의 룰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기구가 정보공유에 관한 적극적 원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독려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¹⁷⁶⁾.

2) 사업자의 자정 및 자율규제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선택의 문제를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175)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개인신용은 추후 서비스 제공).

176) 이에 관하여는, 금감원이 위 모범규준과 함께 공표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및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세부 실행방안’ 참조.

없다. 과도한 텔레마케팅이나 스팸메일의 발송은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불만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신만을 안겨줄 뿐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위험평가, 역선택의 방지 등 보험정보공유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경품보험상품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의 초기적 발상은 작은 것을 쫓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는 경우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도 법적인 형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률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도 내부적인 감시·견제, 내부고발제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공유·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때 보험정보공유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정보공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대응노력 뿐만 아니라 업계 공동의 대응노력, 법적·제도적 내지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노력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법적·제도적·행정적 측면의 지원노력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대응노력과 업계 공동의 대응노력만으로는 보험정보공유제도가 제대로 도입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 또는 행정적 지원과 나란히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 또 하나 있다. 즉 이러한 법을 운용 내지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시각의 문제이다. 위에서 지적하였거니와 보험범죄 내지 모럴·해저드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지급을 막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측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목적) 계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마저 위법하다고 본다면(대법원 2006.10.13.선고, 2004다16280 판결), 보험범죄의 억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코스트는 다른 정직한 보험가입

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1963년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Foster v. Manchester* 판결 참조) 등 주요국의 법리해석이나 관행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논리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법리도 결국 수많은 분쟁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법원의 판단으로 그 모습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바 법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이고 판단이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법의 해석, 운용에 임하는 법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객관적 시각에서의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고 문 헌

- 강경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 江澤雅彦, 「의료보험의 언더라이팅」, 『생명보험』 2005. 3.
-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권현영,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연세법학연구』 제12집 제1권, 2005. 8.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06-18호, 2006. 5.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 한국정보법학회 발표자료, 1997.
- 김두철, 「보험과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금융학회지』 창간호, 1996.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0.
- 김종철, 「헌법적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 김주환,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민권」,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김형기, 「보험회사간 의료정보공유제도」, 『보험학회지』 제65집, 2003. 8.
- 맹수석,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 『보험학회지』 제70집, 2005. 4.
- 문성제·이경환, 「환자의 진료정보와 통제권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29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9.
- 박찬욱,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연암사, 1996.
-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1999.
- 신기철, 「개인연금취급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경영과제」, 『손해보험』, 1994. 6.
- 신현호,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주요 쟁점』, 2001. 10.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 _____,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몰래촬영과 초상권」, 『손해보험』 2006. 11.
- 유황빈,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기술」,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
-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진한M&B, 2005.
- _____,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검토」, 『인터넷법률(법무부)』 제30호, (2005. 7.)
- _____,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16권8호 통권34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이성남·김 건,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 이은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골자」,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자료집, 2004.
- 이인호,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3.
- _____,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법률』 제8호, 법무부, 2001.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관리현황조사계획』, 2004. 1. 9.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 _____,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정보사회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가을호,
- 정형권, 『개인신용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 조동기·김성우,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KISDI 이슈리포트(Vol. 2003. No.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조혜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제도 활성화방안」, 『손해보험』 2006. 4.

- 진덕규, 『민족국가와 폭력』, 1991.
- 참여연대,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 최정환·최중학,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다산출판사, 2001.
- 한국재보험공사, 『재보험』, 1996. 7·8.
- 한상희·황승흠·권헌영, 「정보화와 헌법」, 『디지털시대의 헌법질서』,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황중성 외,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방안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12.
- 高 博一, 『ITビジネス法律バイブル』, 日經BP社, 2002
- 菅原貴与志, 『個人情報保護法と企業法務』, 民事法研究會, 2004
- 島田裕次, 『個人情報保護法への企業の實務對應』, 日科技連, 2004
-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 三上明輝·清水幹治·新田正樹, 『個人情報保護法』, 有斐閣, 2003
- 田島正廣, 『個人情報保護法と金融機關』, 經濟法令研究會, 2005
- 日本 內閣府 國民生活局,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資料)」, 2003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1958.
- Dorfman, Mark S.,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5th.ed., Prentice Hall, 1994.
- Duby, George, Foreword, in *A History of the Private Life I: From Pagan Rome to Byzantium* viii(Paul Veyne ed. & Arthur Goldhammer trans), 1987.
-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Thomas Burger trans.), 1991.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1859.
- Stephen, James Fitzjames,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1873.
- Westin, Alan, *Privacy and Freedom*, 1967.

- WTO, Proposed International Guidelines on Ethical Issues in Medical Genetics and Genetic Services, 1998.
- Cohen, Julie E. "Examines Lives: Informational Privacy and the Subject as Object", 52 *Stan. L. Rev.* 1273, 2000.
- Gross, Hyman, "The Concept of Privacy", 42 *N.Y.Y. L. Rev.* 34, 1967.
- Halvorsen, John P., "Today's Insurance Information Privacy - Why New Jersey Leads the Pack", *New Jersey Lawyer; The Magazine*, 2001 October.
- Hoy, Michael & Ruse, Michael, "Regulating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Risk and Insurance Review*, 2005, Vol.8, No.2.
- Joy L. Pritts, "Altered States: State Health Privacy Laws and the Impact of the Federal Health Privacy Rule", *Yale Journal of Health Policy, Law & Ethics*, 2002 Spring.
- Norian, Paige, "The Struggle to Keep Personal Data Personal: Attempts to Reform Online Privacy and How Congress Should Respond", 52 *Cath.U.L.Rev.*803. 2003.
- Shils, Edwards, "Privacy: Its Constitution and Vicissitudes", 31 *L. & Contemp. Probs*, 1966.
- Thomas R. Hardlick, "Protecting Privacy under Gramm-Leach-Bliley: The NAIC's Model Safeguarding Regula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2001-2002.
- Weible, R. J., "Privacy and Data",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 1993.
- Zielezienski, F. Stephen, Paolino, Catherine I., "Insurance Privacy after GRAMM-LEACH-BLILEY - Old Concerns, New Protections, Future Challenges", *Tort and Insurance Law Journal*, 2002 Summer.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요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연구조사자료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2007-3 2007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정책연구자료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4.11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5.12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저자약력

김 성 태(金星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동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한국보험학회 회장(역임)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증권법학회 등 부회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법무부 상법(보험편) 개정위원회 위원장 등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mail : kimst007@yonsei.ac.kr)

정책연구자료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발행일	2007년	3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	우	씨
	앤	피	

ISBN 978-89-5710-051-6

정가 10,000원